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3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 여러분,

2023년도 ECCK 백서 출간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백서는 유럽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산업별 주요 규제 및 이슈들에 관해 건의하는 ECCK의 중요한 간행물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6월 1일 부로 ECCK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회원사들과 함께 협력하며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들을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CCK는 지난 시간동안 정부와의 효과적인 소통의 창구를 구축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 갔으며, 특별히 규제완화와 친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들은 유럽계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우선순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ECCK 백서는 2015년 처음 출간된 이후 지속적으로 ECCK 및 회원사들과 한국 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하고 특별한 소통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백서는 매년 우리 회원사들, 즉 각 산업 전문가들과 위원회 멤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준비하는데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올해에는 17개 위원회를 통해 100개의 이슈와 안건이 취합되었습니다. 이번 백서의 안건들은 세가지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첫째,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항공방위, 자동차, 주류, 화학, 보험 위원회),
- 둘째, 비즈니스 영향(화장품, 패션 및 유통, 헬스케어, 지적재산권, 관광산업 위원회),
- 셋째, 지속가능성(에너지환경, 식품, 물류 및 운송, 지속가능성 위원회) 이 해당됩니다.

이 세가지 주제와 관련해, 지난 해 새로운 정부는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친기업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ECCK와 회원사들은 이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과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공약들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난해 최고 투자액 기록과 함께 ECCK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 신고액은 304.5억 달러로 전년도 295억 달러에 비해 3.2%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유럽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발전에 부응하여 ECCK는 백서 발간과 함께 한국 정부와의 의미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ECCK지속가능성 어워드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모든 산업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유럽 및 한국 기업들을 알리고 축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어워드 참여 지원서는 9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11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성 어워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올해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유럽 기업과 ECCK가 프로젝트 및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해상풍력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ECCK는 해당 산업의 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발전특별법 제정, 고정식 해상풍력과 부유식 해상풍력의 구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그리고 공해 점유 허가를 포함한 사업개발 관련 인허가 등의 불확실성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기여하기 위해 예를 들어 유럽 국가 상공회의소들과 협력하여 유럽 기업의 기술을 선보이고 한국에서 파트너를 찾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ECCK 백서 발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회원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서를 통해 우리 회원사들이 한국 정부와의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는 또한 한국 기업 및 유럽 커뮤니티 모두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공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 백서 개요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총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네바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그리고 영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유럽 비즈니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ECCK의 주요 간행물이자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모든 건의 사항은 위원회(커미티)에서 활동하는 회원사 대표들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백서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관련 정책 변경을 도모할 중요한 간행물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도 ECCK 백서는 한국 규제환경과 관련된 100개의 이슈와 건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ECCK는 한국 정부, 특히 음부즈만 김성진께서 이끄는 외국인 투자음부즈만 사무소가 이러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행정 기관들과 논의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며, ECCK와 꾸준한 소통을 이어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ECCK는 지난해(2022) 제출된 96 개 건의 사항의 40%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유럽 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유럽의 긴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더욱 자리매김하리라고 믿습니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은 2022년 11월에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6월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으며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중, 한-EU 그린 파트너십 출범을 통해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한-유럽자유무역연합사무국(EFTA)간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위한 꾸준한 논의 등을 미뤄보았을 때, 유럽과 한국 경제가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한국은 세계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도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비춰보았을 때 (2020년 초까지 세계무역기구(WTO)/2021년 초까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상 등재),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상당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ECCK는 한국이 세계 경제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ECCK 백서에는 100개의 이슈와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한국의 각종 규제와 관련한 사항으로 인해 제기되었습니다. 어떠한 규정들은 국제적 기준을 따라 제정되었지만 실제 한국 환경에 맞춰 변경되었거나, 또 다른 내용들은 한국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ECCK와 모든 회원사는 한국이 특히, 시험 및 인증 영역에서 국제 표준의 완전한 채택을 실현시키고, 더 나아가 관련 분야에 대한 상호 협정을 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총장

#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3

## 목차

ECCK 백서 2023 인사말	p. 2
백서개요	p. 4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소개	p. 8
백서 사용 안내서	p. 17
2022 리뷰	p. 19
ECCK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p. 28
항공 방위	p. 29
자동차	p. 31
주류	p. 47
화학	p. 53
화장품	p. 60
에너지 환경	p. 65
패션 및 유통	p. 72
식품	p. 78
헬스케어	p. 81
보험	p. 94
지식재산권	p. 99
주방 및 소형가전	p. 104
물류 및 운송	p. 110
조선 및 해양	p. 114
지속가능성	p. 116
조세	p. 118
관광산업	p. 121
부록	p. 128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협회입니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 유럽기업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약 40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약 5 만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원사 대부분은 유럽계 기업들이지만,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적의 기업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CCK는 회원사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운영과 방향에 대하여 정보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은 사무국을 통해 집행됩니다.

ECCK는 유럽 기업들에게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및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 기업들과 한국 정부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합니다. 연간 발행하는 백서는 ECCK가 유럽 기업들과 한국 정부 간에 소통 창구가 되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럽과 한국을 연결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국내 및 글로벌 CSR파트너들과(자선/봉사단체) 멤버사들을 연결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CCK는 유럽집행위원회 및 유럽자유무역협회(EFTA)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ECCK는 전세계 유럽상공회의소의 모임인 유럽 비즈니스 월드와이드 네트워크(European Business Organisation Worldwide Network, EBO WWN)의 멤버로도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설립이념 및 활동목적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영역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의 대화 촉진을 통한 공정하고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 보장
- 한국과 유럽의 비즈니스, 경제 및 규제 발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소통 촉진
- 회원 및 파트너 대상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실천 촉진을 통해 한국 사회에 공헌
- 유럽 비즈니스 및 문화적 대사로서 활동

## 이사진



**필립 반 후프**(벨기에)  
회장  
ING 한국  
대표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회장은 2021년부터 ING 한국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ING 한국대표로 부임 전까지, 싱가포르에 위치한 ING 은행 아시아 태평양 금융기관영업부 대표를 맡았으며, 또한 2017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임원직을 역임했습니다. 반 후프 회장은 29년의 은행(banking)산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싱가포르, 한국, 일본에서의 15년 간의 근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과의 전략적 관계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그는, 경영진/이사회 수준에서 보험사, 자산관리자, 증권사 및 국부펀드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적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 후프 회장은 벨기에 시민으로, 2021년 ECCK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22년 ECCK 지속가능성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바 있으며, 2023년 6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유럽상의(Eurocham in Singapore)에서 금융서비스 위원회 회장을 2018년까지 맡았고,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싱가포르유럽상의 부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스테판 알브레히트**(독일)  
부회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부사장

스테판 알브레히트(Stefan Albrecht) 부회장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재무 부문 총괄 부사장 겸 CFO로 2021년 8월부터 선임되었습니다. 1992년 다임러 그룹 벤처캐피탈에 투자담당으로 합류한 뒤, 2003년에는 항공 엔진을 제조하는 MTU 에어로엔진 M&A 부서에서, 2004년에는 트럭 부문에서 여러 임원직을 역임했습니다. 2005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M&A 총괄을 맡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베이징에서는 포톤(Foton)과 대형 트럭 및 중장비 사업 합작법인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베이징 포톤 다임러 오토모티브(BFDA)의 재무부문 총괄 및 기술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역임했습니다. 이어 2017년부터는 메르세데스-벤츠 일본 재무부문 총괄로 지내면서 5년 연속 일본 수입차 1위를 견인하며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습니다.

## 이사진



**김연희**(한국)  
부회장  
갈더마 코리아  
대표

김연희(Younhee Kim) 부회장은 한국 출신으로 2020년도 10월부터 갈더마 코리아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약, 백신, 스킨케어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약 20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한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럽 및 미국에서의 근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 비즈니스와 한국 문화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MSD, MSD 본사, 멀츠 코리아, 로레알 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며 영업, 마케팅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이끌어간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ECCK의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2022년 5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퍼 스테니우스**(핀란드)  
부회장  
레달  
대표

퍼 스테니우스(Per Stenius) 부회장은 핀란드 시민권자로 2010년부터 레달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레달본사의 회장 겸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산업에서의 전략 및 운영 프로세스 개발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McKinsey & Company, Accenture, Stratos Ventures 등 여러 기술 회사에서 최고 경영 컨설턴트와 경영진으로서의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헬싱키 공과대학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는 비즈니스 및 과학 분야 주요 학술지에 30편 이상의 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레달코리아와 함께 ECCK에 가입하였습니다.



**이가영**(한국)  
이사  
크노엘코리아  
대표

이가영(Gayoung Lee) 이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2016년 1월 한국법인 설립 때부터 크노엘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크노엘에 합류하기 전, 주로 컨설턴트로서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관련 부문에서 종사하였습니다. 크노엘에서는 화학규제 관련 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 이사진



**에릭 롤란스(벨기에)**  
이사  
ER-MARINE  
대표

에릭 롤란스(Erik Roelans) 이사는 벨기에 시민이며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ER-MARINE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해상 석유 및 가스 운영 및 해상 신조선 프로젝트에서 쌓은 20년 이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2008년부터 에릭 롤란스는 해양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와 LPG, LNG, 메탄올 및 해양 설비의 하이브리드 전기화를 통한 대체 연료 구현 개념을 개발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롤란스 이사는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주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에서 전문성을 구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보다 지속 가능한 세상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솔루션으로 전환합니다.



**유태승(한국)**  
이사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공동대표

유태승(David Taeseung Yoo) 이사는 한국 출신으로 2018년 이후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18년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를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현재 COP는 한국에 Multi giga watt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확보하여 개발 중에 있는 이 분야의 선도 기업입니다. 그는 국내외 해상풍력사업의 실전경력을 갖춘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 13년간 해상풍력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해상풍력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기의 개발 및 실증센터의 설립을 포함한 국가 해상풍력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였으며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 이사진



**로버트 브로웰(영국)**  
감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로버트 브로웰(Robert Browell) 감사는 영국 시민권자이며, PwC의 국내 멤버 펴( Member Firm)이자 한국 최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일회계법인의 Partner입니다. 브로웰 감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유럽 기업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다국적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20년 이상 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PwC UK에 첫 입사 후 그는, 10년 이상 근무하며 영국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2012년도에 삼일회계법인에 입사를 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로웰 감사는 현재 유럽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과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요한 반드롬(벨기에)**  
이사  
김앤장  
선임고문

요한 반드롬(Johan Vandromme) 이사는 벨기에 출신으로 2007년-2009년,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김앤장의 선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반드롬 이사는 2007년 한국에 오기 전, 2001년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s Competition Directorate-General) 담당관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주 베이징 EU 대표부(European Commission at the Delegation in Beijing)로 복귀해 무역 및 경쟁 문제를 다뤘으며, 이후 2013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 김앤장 선임고문으로 부임 전까지, 베이징 대표부(Beijing Delegation)에서 위원회의 경쟁 및 공정 정책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총장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은 2013년 6월 1일부로 현직에 취임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독일 바이엘(Bayer AG)에서 근무하였으며, 일본지사에서도 회계부서장을 한국지사에서도 재무이사(CFO)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88년 브라운슈바이크 대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1년 만하임 대학교 경영경제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1996년 일본어 대학원 과정을 독일 튀빙겐 대학교와 일본 도시샤 대학에서 수료하였습니다.

하이더 총장은 2023년 9월 30일을 끝으로 ECCK 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스테판 언스트**  
스테판 언스트(Stefan Ernst) 총장 예정인은 2023년 10월 1일부로 ECCK의 총장으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강선영**  
대리, 국제협력 & 매니지먼트 서포트

**김보선**  
부총장, 대정부 관계

**김시윤**  
과장, ICT / 보험 / 조세 위원회

**김영은**  
이사, 홍보&커뮤니케이션

**김태양**  
과장, 화학 / 에너지환경 위원회

**나은성**  
과장, 패션 및 유통 위원회 / 지식 재산권 위원회

**노금채**  
차장, 경영지원부

**박안숙**  
이사, 화장품 / 헬스케어 위원회

**박정주**  
대리, 멤버십 & 재무 서포트

**서효경**  
이사, 위원회 총괄  
주류 / 식품 /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신지현**  
대리, 홍보&커뮤니케이션

**심혜원**  
차장, 마케팅 &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

**안드류 밀라드**  
부산 지부장

**임창훈**  
부장, 항공 및 방위 산업 / 자동차 위원회

**카산드라 탈봇**  
과장, 물류 및 운송 / 지속가능성 / 관광 위원회

**위원회 및 포럼**

산업별 위원회 및 포럼은 상공회의소 활동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와 포럼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현재 해당산업의 규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무역/사업 이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제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규제기관과 관련된 특정산업의 이슈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 포럼에서는 인사관리, 사회공헌활동 등 포괄적인 주제들을 논의합니다.

**행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서는 비즈니스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동시에 회원들간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산업 및 경제계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소통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정보교류의 중심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여, 회원사들에게 시장동향과 규제이슈, 주요 사회적 트렌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또는 특정한 산업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기 간행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ECCK 백서 (ECCK White Paper)
- 기업환경조사 보고서(Business Confidence Survey)
- 디지털 매거진(ECCK Connect Magazine)
- ECCK 회원명부(ECCK Membership Directory)
- 주간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백서 사용 안내서**

**ECCK 백서 2023 사용 안내서: 주요이슈 및 건의사항**

해당 백서는 2023년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100개의 산업 및 규제 관련 이슈와 건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한국 기업환경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해 일조하고자 ECCK의 17개의 산업별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본 백서는 오로지 한국과 유럽 기업 상호간 우호증진과 양측 정부간의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백서에 제기된 모든 이슈는 관련 당국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함께 제시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주요이슈**  
규제에 대한 현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소개.

**2022 건의사항**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의 권고사항 설명 소개.

**관련규정/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건의사항이 작년 백서에 이어 '재건의' 또는 '개정' 되었거나 2023년에 '신규'로 포함된 내용임을 나타냄.

**화장품**

7  
총 주요이슈

1. 규정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제도 재검토

이슈요약  
현행 화장품법은 20여년전 약사법에서 유래되어 제정되었으나 현재 세계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화장품 산업환경을 고려했을 때 변화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화장품의 효능을 사전에 승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화장품의 효능 관리 책임이 기업에 있고 시장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매우 다른 점입니다. 또한 기업의 제품 개발 속도와 다양성이 중요한 화장품 산업에서는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평가 및 실증제도에 대하여, 모니터링 제도나 역량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규제와 조화된 규제 환경하에, 한국 화장품 산업이 제품 개발 속도 및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유효성을 민간 실증제도를 기반으로 입증한다는 조건하에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신규
---------------------------	--------------------------------

2.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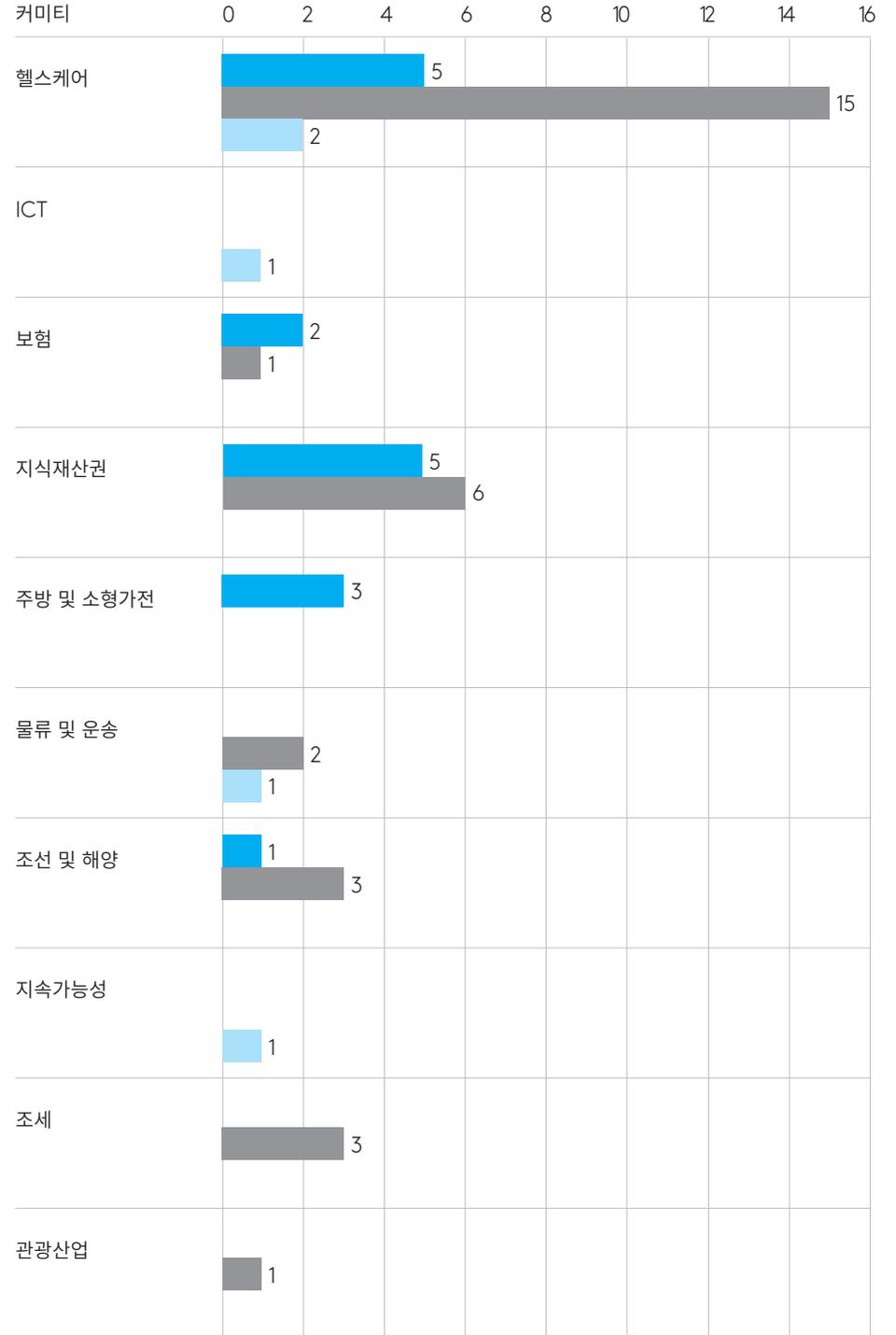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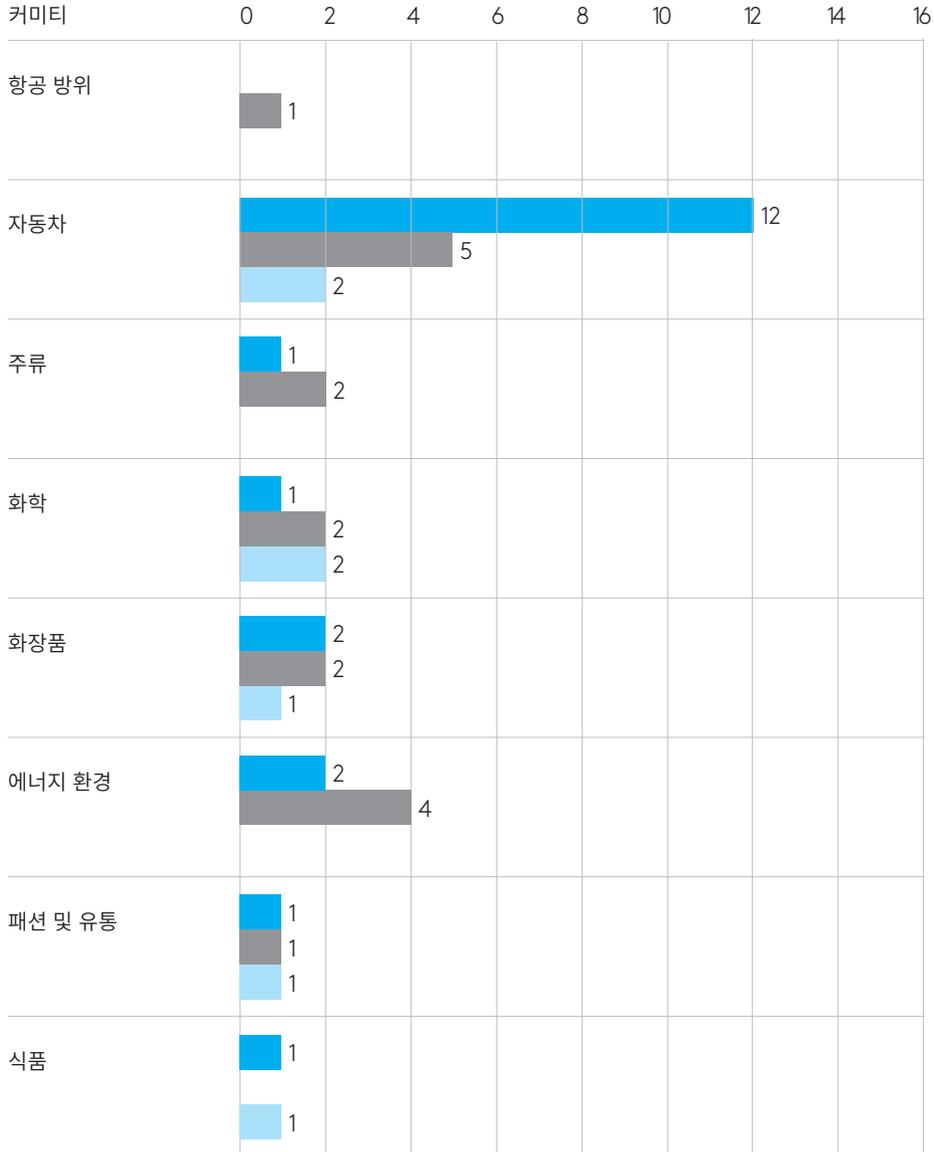
이슈요약  
환경법상 화장품 제조사 명과 그 소재지 정보를 제품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용량 및 안전 관리, 유통, 판매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화장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표시 기재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화장품에 제조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 2022 리뷰

2022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18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이슈 및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96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규제이슈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 회신 내용은 아래 산업별로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 수용 ■ 미수용 ■ 장기검토



2022년도 각 산업별 규제이슈 및 제안과(총 96개) 그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 회신 내용 및 ECCK의 조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부처 평가

-  수용
-  부분수용
-  미수용
-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  안전종료(완료)
-  안전종료(중단)
-  진행상황 점검
-  재건의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b>항공 방위</b>	1 절충교역 정책 개선		
<b>자동차</b>	1 미완성자동차에 대한 적용 기준의 개선		
	2 자동차 제작자 제출 자료의 제출 기한의 개선		
	3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서 신속 중재 심리 절차 도입		
	4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5 국제기준 인정 제도의 활용도 제고		
	6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수정		
	7 배출가스 변경보고의 진행 절차 개선		
	8 배출가스에 영향이 없는 자발적 무상 수리건에 대한 보고 생략		
	9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FAS)에서의 유연성 부여		
	1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저온 일산화탄소 시험 조건 명확화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11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 개선		
	12 전기자동차 인증 절차 명확화		
	13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험 절차 조건의 일원화		
	14 전기자동차의 저온 전기동력 주행거리 시험 조건		
	15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실적확인서 발급 요청		
	16 중대형 상용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의 합리화		
	17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절차 개선		
	18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등재 절차 개선		
	19 자동차 규제 부처의 일원화		
<b>주류</b>	1 주류소매면허자에 주류 전자상거래 기회 제공		
	2 종량제 적용대상 주세 정책 로드맵 수립 계획		
	3 주류 표시사항 QR 코드 도입		
<b>화학</b>	1 국제 기준과의 조화		
	2 예측 불가능한 법 개정 및 짧은 의견 개진 · 유예 기간		
	3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승인유예기간 내 수입 · 제조 · 판매 허용 요청		
	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향료 표시 기준 개선		
	5 MSDS상 화학물질의 대체명칭의 작성 방법 변경		
<b>화장품</b>	1 제품 포장 간이측정방법 단순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2 포장방법 사전검사 도입 재검토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3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방법	⊗	⊗
	4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	📈
	5 TSE/BSE 관련 서류 제출방법 개선	⊗	🔄
<b>에너지 환경</b>	1 장기적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개발 장려	⊗	⊗
	2 전기사업허가에 대한 주민동의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
	3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은 해역에서의 전기사업허가 주체	⊗	🔄
	4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전용 REC시장 도입	✔️	✔️
	5 속도 있는 해상풍력 개발 및 계통용량 선점 방지를 위한 제안	✔️	✔️
	6 한국가스공사와 산업용가스·화학 업체간 원재료용 천연가스 직접계약 (도매가격적용)	⊗	⊗
<b>패션 및 유통</b>	1 생활용품 표시사항 관련	⊗	🔄
	2 금속장신구 납 함량 기준	🕒	🔄
	3 유아용 섬유 제품의 안전확인 기준	✔️	📈
<b>식품</b>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범위	🕒	✔️
	2 버터의 "무가염" 표시	✔️	✔️
<b>헬스케어</b>	1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약제의 적용범위 확대	⊗	🔄
	2 식약처 지정 희귀의약품, 삶의 질 개선 만성질환약제에 대한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확대	⊗	🔄
	3 위험분담제 재평가 및 재재평가 사후관리 개선	⊗	🔄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4 위험분담약제 급여기준 확대 제도 개선	⊗	🔄
	5 환급제를 위험분담제로부터 분리 제도 개선	⊗	🔄
	6 일반약제 급여기준 확대 절차개선 및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	📈
	7 만성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희귀질환에 대한 급여등재 제도 개선	🕒	📈
	8 복합 만성 대사성 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	✔️	✔️
	9 적응증별 가치 기반 약가 제도 도입	⊗	📈
	10 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 함량산식 예외 적용 및 개선 (소아약제 우대)	✔️	📈
	11 의약품 품목허가 양도양수 시 표준코드 선부여 허용	⊗	📈
	12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분류 전환 절차 정립	⊗	📈
	13 일반소비자 대상 광고와 전문의료인 대상 광고의 별도 기준 필요	⊗	⊗
	14 감염병진단 신기술의 행위 신설 시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의견 개진 절차신설	⊗	📈
	15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항균제내성유전자 신속검사 활용	⊗	🔄
	16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신규도입 및 후보백신 선정시 백신 업계의 참여 경로/절차, 소통의 창구 부재	✔️	📈
	17 국가출하승인의약품(백신) 위해도 단계 평가제도 개선	🕒	📈
	18 (백신포함) 생물학적제제의 중복적인 GMP 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개선을 위한 EU-한국간 상호인정협정 진행	✔️	📈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19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통한 혁신적 백신의 가치 인정	⊗	↻
	20 예방접종 시행비 체계 개선을 통한 다가 혼합백신의 접종 장려 방안 강구	⊗	↻
	21 국가예방접종 데이터 공유의 정상화/데이터 세분화 및 구체화	⊗	⊙
	22 안정상비의약품 선정 기준 규정화 및 지정위원회 의사결정 투명화	⊗	⊙
<b>ICT</b>	1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진입장벽	⌚	⊙
<b>보험</b>	1 비회원사에 대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시 손해보험협회의 공식 통지절차 부재	⊙	⊙
	2 이륜차 수리기준 표준화	⊗	↻
	3 약물, 마약 등의 상태로 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한 약관 적용	⊙	⊙
<b>지식재산권</b>	1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	⊙
	2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 제고	⊙	⊙
	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	↻
	4 병행수입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	⊙
	5 재판매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	⊙
	6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	⊗
	7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	↻
	8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	⊗
	9 유사상품에 대한 단속	⊙	⊙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10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	⊙
	11 온라인 위조품 단속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	⊗
<b>주방 및 소형가전</b>	1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전자문서화	⊙	⊙
	2 전기용품 인증데이터 검색 개선	⊙	⊙
	3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방법 중 제조시기 표시사항 개선	⊙	⊙
<b>물류 및 운송</b>	1 황해와 일본행 통상로에 대한 외국선박의 접근 확대	⌚	⊙
	2 연안무역에 대한 규칙	⊗	⊙
	3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관리비	⊗	⊙
<b>조선 및 해양</b>	1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	⊗	⊗
	2 해양산업 관련 주52시간 근무제 개선	⊗	⊗
	3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해양산업 연구개발비 지원 및 프로그램 접근의 불공정성	⊗	⊗
	4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개정 반대	⊙	⊙
<b>지속가능성</b>	1 지속 가능성/순환 경제 교육	⌚	⊙
<b>조세</b>	1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	⊗
	2 단일세율 적용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 제외	⊗	↻
	3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부동산 자발적 신고에 대한 과태료 면제	⊗	⊗
<b>관광산업</b>	1 호텔 옥외광고물 제한	⊗	⊙

# ECCK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임창훈  
부장  
항공 방위  
위원회

# 항공 방위

## 1

총 주요이슈

### 1. 절충교역 제도 개선

#### 이슈요약

한국에서 군수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절충교역입니다. 절충교역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들(기술 이전, 물류 지원 등을 포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제조 및 수출'에 대한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절충교역지침과 규칙에 대한 경직된 해석으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제조 및 수출'에 대한 프로젝트 포함)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업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사항은 외국 기업들의 원만한 절충교역 프로젝트 이행과 한국 기업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이는 사항들입니다.

1. 기존 계약 및 작업 패키지의 인정 여부  
기존 계약 및 작업 패키지는 현재의 절충교역 지침 하에서는 새로운 교역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기존 계약 및 작업 패키지를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절충교역 이행 기간의 연장  
초기 절충교역 프로그램 이행 기간(일반적으로 본 방위 계약 이행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적인 작업 패키지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 패키지는 다른 절충교역 의무나 혹은 향후의 절충교역 의무에 활용될 수 없습니다.
3. '뱅킹(banking)' 제도의 확대  
절충교역 지침에 따르면 '뱅킹(banking)' 제도는 현재의 절충교역 의무나 다수의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절충교역 계약 이행 기간이 종료된 후에 생성된 크레딧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절충교역 의무에 활용될 수 없습니다.

### 건의사항

한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조달 물량을 절충교역의 인정 범위에 포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소요 기간이 긴 항공 방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절충 교역 의무 이행 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의 절충교역 의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뱅킹(banking)' 제도의 범위를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절충교역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을 유지/확대시키고 또한 한국의 공급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기업과 공급사에도 분명히 유익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절충교역지침  
방위사업청  
개정

임창훈  
부장  
자동차 위원회

# 자동차

## 20

총 주요이슈

1. 한-EU FTA 및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에서의 기술규정 인정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

### 이슈요약

현재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에 있어서, 해외(유럽)의 기술 규정을 인정해 주는 규정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 안전기준의 차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자가 한국 사양의 자동차를 별도로 개발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 유럽의 안전 기준을 조화시키고 또한 '한-EU FTA 부록 2-다-3'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의 별표4(이하 '별표4')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규정 번호 업데이트 : EU/UN 규정 및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규칙)이 개정되었으나, 한-EU FTA의 부록 2-다-3과 별표4에는 개정되기 전의 규정 번호가 존재합니다.

예)

기술규정		개정 전	개정 후
등화장치	유럽	UN-R4, 6, 7, 23, 38, 50, 77, 87, 91	UN-R148
		UN-R19, 98, 112, 113, 119, 123	UN-R149
		UN-R3, 27, 69, 70, 104	UN-R150
연료장치 (후방충돌)	한국	자동차규칙 제91조	자동차규칙 제91조의2, 제91조의3
	유럽	UN-R34	UN-R153
전자파 적합성	한국	자동차규칙 제111의2	자동차규칙 제107조

- 한-EU FTA 부록 2-다-3 및 별표4에 기준이 이미 조화된 규정들을 추가.

예) 

기술규정	한국	유럽	비고
고정벽 정면 충돌	자동차규칙 제102조의3	UN-R137	
기동 측면 충돌	자동차규칙 제102조의4	UN-R135	
저속음 자동차 경고를 발생 장치	자동차규칙 제53조의3	UN-R138	
좌석안전띠 장치	자동차규칙 제27조	UN-R14,16	별표4에 추가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자동차규칙 제12조의2, 제88조의3	UN-R141	
창유리	자동차규칙 제34조	UN-R43, GTR6	

- 유사한 규정에 대한 기준 조화

예) 

기술규정	한국	유럽
후방보행자 안전 장치	자동차규칙 제53조의2	UN-R158
연결 장치	자동차규칙 제20조	UN-R55

**건의사항**

한-EU FTA 부록 2-다-3 및 별표4에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건의합니다(개정된 규정 번호 반영, 조화된 안전 기준들의 추가, 한국과 유럽의 기준 조화 등).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EU FTA 부록 2-다-3</li> <li>•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4</li> </ul>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이슈요약**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수정  
 현재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트랙터는 한-EU FTA의 자동차 부속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군을 FTA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한-EU FTA 협상 시,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다-1에 있는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표기 오류로 인하여 해당 제품이 한-EU FTA 자동차 및 부품 부속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속서에 규정된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석안전띠 부착에 대한 안전 기준의 경우, 한-EU FTA 부속서에서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UNECE의 해당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국내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속서 적용대상에서의 제외로 인해 UNECE 기준을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자동차제작자는 한국의 안전기준에 맞는 사양을 별도로 개발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갖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EU 자동차제작자와 국내 소비자가 FTA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가 한-EU FTA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EU FTA 협정문의 관련 조항 수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한-EU FTA,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구동축전지 안전성 인증 제도

**이슈요약**

전기차에 장착되는 구동축전지에 대해 사전에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구동축전지 안전성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본 제도가 유럽 제작사의 전기차 국내 판매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국회에서는 자동차제작자 혹은 부품제작자는 신기술이 적용된 핵심 장치에 대해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에 장착되는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 자동차제작자는 본 제도로 인해 전기차 인증을 진행하는 데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고 전기차를 도입하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구동축전지의 상세제원 제출 범위는 UN-R100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기인증라벨은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 인증도 완료되었다는 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성 인증 표시를 자동차에 추가로 부착하는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구동축전지의 중요한 변경 사항들은 UN-R100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WP29에 시험기관으로 등록된 Technical Service는 추가적인 등록 절차 없이도 국내에서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적합성 검사는 유럽에서 실시하는 COP (Conformity of Production)와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중복하여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보여지며, 유럽의 COP 관련 보고서 및 성능시험성적서 제출로 한국의 적합성 검사를 같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건의사항

유럽 자동차제작자가 유럽에서 UN-R100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동축전지 안전성 인증 제도에서의 요건들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동축전지에 대한 상세제원 제출 범위 및 중요 변경 사항 항목을 국제기준(UN-R100)과 조화, 구동축전지 안전성 인증 표시는 자기인증라벨로 같음, WP.29에 등록된 Technical Service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시험 기관으로 자동적으로 지정, 적합성 검사는 유럽의 COP결과로 같음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3월) 제30조의7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이슈요약**  
국내의 자동차의 너비에 대한 기준이 유럽에서의 기준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자동차의 너비가 2.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자동차 너비 규제치는 2.55m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2.55m 너비 기준으로 제작된 유럽의 버스 및 일부 트럭 차량은 국내로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행 국내 차로에 대한 폭 기준은 3m~3.5m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 조건에 따라 차로 폭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해서 유럽의 자동차 너비 기준인 2.55m에 해당되는 0.05m의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전기버스와 같은 친환경 승합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유연성 부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화물/특수자동차 및 2층

승합자동차, 친환경 승합/화물자동차 등 제한적인 차종에 대해서 2.55m 너비 기준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본 건의 사항은 2022년도 ECCK 백서에서도 건의를 하였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너비기준은 도로설계 기준에 맞춰져 있어서 너비기준을 개정하면 도로 교통에 영향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너비 기준 완화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너비 기준 완화 시에 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건의사항

화물/특수자동차 및 2층 승합자동차, 친환경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55m까지 자동차 너비를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너비기준 완화가 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4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5. 구동축전지 안전 기준에 대한 UN Regulation 형식 승인서의 인정

**이슈요약**  
한국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 시에 UN Regulation 형식 승인서를 인정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현재 한국의 구동축전지 안전기준은 대부분 국제기준과 조화되어 있으나, 국내 시험 항목 중 침수시험은 국제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험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제작자는 한국에서 요구 받는 본 시험 항목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여 본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UN R-100에서는 국내 침수시험과 유사한 시험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UN R-100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는 국내의 침수시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안전성을 검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UN R-100을 준수하는 전기자동차는 국내 구동축전지 시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시험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UN R-100 Annex 7A : Verification method for testing authorities confirming document based isolation resistance compliance of electrical design of the vehicle after water exposure  
UN R-100 Annex 7B : 7B Vehicle-based test procedure for protection against water effects

#### 건의사항

구동축전지에 대해 유럽에서 발행된 UN R-100의 형식 승인서가 있는 경우, 해당 구동축전지에 대해서는 국내의 구동축전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한-EU FTA의 부록 2-다-3에 구동축전지에 대한 기술규정(UN R-100)을 추가하여, 구동축전지가 유럽연합의 기술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한국의 기술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3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이슈요약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제도 개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에 부여되는 요건들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제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업데이트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제작자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분량이 많으므로 모든 업데이트를 보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데이트 보고에 대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승인이 지연될 경우, 이에 따라 차량 판매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제출 방식보다는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유럽 자동차제작자의 본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유럽에서 발행된 UN Regulation 형식승인서가 있는 경우(사이버보안 : UN R-15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UN R-156), 국내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제도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제도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항을 자동차제작자가 사전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유럽 제작자의 본사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건의합니다.

한-EU FTA의 부록 2-다-3에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제도에 대한 기술규정(UN R-155, 156)을 추가하여, 해당 기술항목에 대해 유럽연합의 기술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한국의 기술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입법 논의 단계)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이슈요약  
 신기술에 대한 특례 인정 절차의 마련  
 자동차에 적용되는 신기술에 대해 국내에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제작자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례를 인정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절차가 국내 관련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자 측에서는 특례의 신청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국내 도입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특례 인정 절차의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 내용은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자동차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해 국내에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관련 절차를 올해(2023년) 안에 마련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의2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8. 이슈요약  
 배출가스 변경보고 절차에서의 전산화 적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변경보고 제도에서 전산 시스템의 추가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인증을 받은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보고 제도는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변경사항을 환경부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제작자가 변경보고를 제출하면, 변경보고 신청일로부터 변경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제작자가 변경보고를 서류 형태가 아닌, KENCIS(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를 통해 변경보고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제작자가 변경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사항

자동차제작자가 변경보고 사항에 대해 KENCIS(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를 통해 제출을 하면, 이를 자동차제작자가 변경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9.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FAS)에서의 유연성 부여

이슈요약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차량의 대당 평균 배출량을 관리하는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FAS : Fleet Average System)에서 자동차제작자의 보다 원활한 규제 준수를 위한 유연성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를 통해 제작자의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판매된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평균 배출량을 계산하고, 그 값이 정해진 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2050년 탄소 중립 등에 따라 자동차 환경 기준이 매우 빠르게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판매가 예상만큼 높지 않은 경우 자동차 평균 배출량 기준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차량 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평균 배출량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는 자동차 평균 배출량에 대한 크레딧을 제작자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제작자도 크레딧 거래라는 수단을 통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배출량 제도는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규제 사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연성 부여 제도까지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제도에서도 제작자간 온실가스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에서 배출가스(NOx, SO2 등) 기준 달성에 따른 크레딧을 제작자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제도 개정을 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6년부터 적용될 차기 평균 배출량 기준 도입 시부터 크레딧 거래를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의 2</li> <li>•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의2]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li> </ul>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0. 중·대형 상용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의 마련

이슈요약

중대형 상용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평균량을 관리하는 중대형 상용차 평균 온실가스 제도와 관련하여, 차기 목표 기준이 가능한 조속히 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평균 온실가스 제도는 2023년부터 자발적 감축 기간이 시행되어, 2026년부터는 의무 감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의 감축 목표 및 목표 설정 방식, 그리고 목표 미달성시에 자동차제작자에 부여되는 불이익에 대한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온실가스 제도 대응을 위한 관련 계획을 보다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들이 가능한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2026년 이후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기준연도(2021~2022)에 대상 자동차 제작자에서 배출된 산업평균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준을 가능한 조속히 확정하고 목표 미달성시의 제재 기준에 대해서도 업계와 공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1. 전기자동차의 저온 전기동력 주행거리 시험 조건

이슈요약

전기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측정할 때 적용되는 히터 설정 조건을 실제 자동차 운행 환경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별표5의2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저온(-6.7℃)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은 '히터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보통 여러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실내 온도가 40℃ 이상 매우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 시험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저온 시험에서의 히터 설정은 72°F(= 22°C)의 '자동 모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40 CFR Part 1066, Subpart H),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22°C의 '자동 모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GB/T 18386). 두 경우 모두 자동차 운전자의 현실적인 운행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건의 사항은 2022년도 ECCK 백서에서도 건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제작사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사항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건의사항

전기자동차에 대한 저온(-6.7°C)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 시의 히터 조건을 현행 '히터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22°C의 자동모드'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2. 전기자동차의 인증 시 제출하는 자료 항목의 개선

이슈요약

전기차 인증 시에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항목에서, 자동차제작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항목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인증 시, 자동차제작자는 전기차 부품에 대한 사진 제출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증 기관에서 자동차제작자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실제 자동차의 부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서류 상의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단지 사진 제출만으로 그것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진 제출은 실제적인 효용보다는 제작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절차로 보여집니다. 한편, 내연기관차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의 경우는 인증 시 특정 부품의 사진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제작자는 전기차 인증 시, 인증 기관에서 전기차 주행 거리 시뮬레이션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전기차 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들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인증 절차에서의 제출 항목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전기차 인증 시에 전기차 부품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애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전기차 주행거리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는 전기차 인증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3.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이슈요약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운행되는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량이 많으므로, 친환경 중대형차 보급 촉진은 교통부문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유럽계 화물자동차 제작사는 중대형 전기 화물차의 조속한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의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부분에서 친환경 상용차의 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기 승합자동차와 수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조금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또한, 중대형 전기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용 충전시설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중대형 전기 화물차 전용 충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트랙터와 같은 특수자동차 포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의 마련 및 시행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중대형 화물자동차 전용 충전시설의 확충과 충전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4. 인증 시험/광고 목적 자동차에 대한 관리 기준의 개선

이슈요약

인증 시험용 혹은 광고 목적으로 수입한 자동차는 국내에서 판매가 불허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증 시험(배출가스/소음/연비 시험) 혹은 광고 및 전시를 위해 특례로 통관이 된 자동차는 이후에 해당 자동차 모델에 대해 인증을 받게 되더라도,

최초의 수입이 인증을 받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를 다시 해외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폐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자원과 비용의 낭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 인증 시험(배출가스/소음/연비) 혹은 광고 목적으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모델(Model Family)이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5. 이슈요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 (KENCIS) 개선을 통한 인증 절차 효율화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이하 'KENCIS') 개선 연구를 통해 향후 자동차 환경 인증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KENCIS를 통해 인증 업무를 전산화하고 서류의 제출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KENCIS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증 관련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인증 관련 모든 서식을 KENCIS에 반영하고(예: 전기차의 인증 서식이 내연기관차 서식과 다른 부분을 반영하여 전기차에 대한 인증 신청 서식을 구분하여 반영), 입력 상의 실수 등을 줄이기 위해 엑셀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향후 모든 인증 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추진을 건의합니다. 인증 관련 모든 서식을 KENCIS에 반영하고, 입력 상의 실수 등을 줄이기 위해 파일 업로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6. 이슈요약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시설에 대한 변경 보고 절차의 명확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에 보고하는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배출가스 시험과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 시설에 대해, 시험 시설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이에 대해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경우, 배출 가스 시험 시설의 인력과 설비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을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도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시험 시설의 변경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의사항

시험 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해 환경부로 보고가 완료되면, 환경부장관의 해당 확인 결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로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7. 이슈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등재 절차 개선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하는 저공해/무공해 자동차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이하 '환친차')로 지정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에서, 환친차로 등재되기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하는 저공해/무공해차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친차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환친차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차종이 관련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되어야 하며, 고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환친차 등재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전기차 등을 적기에 시장에 보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가 환친차를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환친차 등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다 단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사항

환친차 등재를 위한 절차를 현행 고시 개정 방식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유사한 웹사이트 등재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재건의

18.  
자동차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무역 장벽  
요소 제거

**이슈요약**  
자동차 내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소화기 수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내의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의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 유럽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제조사자는 설치된 소화기에 대해 자동차 충돌 시험 등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시험을 진행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래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유럽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의 공장 출하 전에 소화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자동차의 수입/통관 후 한국산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먼저, 소화기에 대한 형식승인 요건이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서로 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유럽에서 장착된 소화기를 국내에서 승인 받고 이를 통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거나 시험시설을 가진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제품검사를 위해 다수의 소화기를 자동차에서 분리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시험을 진행한 이후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산 소화기를 유럽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장착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건의사항**  
유럽연합의 형식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 소화기에 대해서는 자동차 내 소화기로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한국과 유럽의 소화기 요건을 서로 조화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자동차 통관 시, 소화기를 분리하여 한국 내에서 추가로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들을 폐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1조  
소방청  
신규

19.  
자동차 관련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이슈요약**  
자동차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정부 부처 전산 시스템을 부처 간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제조사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인증 및 관리에 대하여 각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 관련 정보들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산 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양식이 다른 경우가 있고, 유사한 정보를 각 전산 시스템마다 중복하여 입력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동차제조사자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동차제조사자는 자동차 인증을 받은 후에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KENCIS)에 제원관리번호와 차대번호를 모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KENCIS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제원에 대한 시스템과 연계된다면, 자동차제조사자에서 별도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의사항**  
자동차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정부부처의 전산 시스템을 부처 통합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하거나 혹은 부처 전산 시스템 사이에서 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20.  
자동차 규제 부처의  
일원화

**이슈요약**  
현재 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여러 부처에 산재하여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부처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의 주요 관리 정책과 안전 분야의 경우 국토교통부, 배출가스 및 소음은 환경부, 에너지소비효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산재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이 발전하고 그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업무를 여러 부처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사항은 이들 3개 부처가 각각의 근거에 따라 규제하고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건의 사항은 2022년도 ECCK 백서에서도 건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각각 수용불가와 장기검토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미래차의 보급에 발맞춰 관련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자동차 규제 부처의 일원화를 보다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의사항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전담하는 기관의 창설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예: 독일 자동차청(KBA)].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부처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서효경  
이사  
주류 위원회

# 주류

## 5

총 주요이슈

1. 주류소매면허자에 주류 전자 상거래 기회 제공

### 이슈요약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온라인 식품 및 음료의 구매 행태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2022년 국내 온라인 구매액은 USD1,570 억으로 2021년의 USD1,180억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음료 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이(12.69%)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성인 인증을 하면 '전통주'는 아무런 제약 없이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가능하지만, 맥주, 수입 와인 및 증류주 등은 음식과 함께 배달 주문할 때만 온라인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와 달리 주류의 온라인 상거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스마트 오더 시스템' 도입을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주류를 주문한 후 매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소매업체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매장 내 대기 및 주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스마트 오더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시장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전자 상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 없이 주류소매면허자들의 전자상거래를 계속해서 규제한다면, 한국의 소규모 주류 생산자들의 성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수제 맥주, 와인, 증류주 생산업체들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품질과 장인 정신으로 명성이 자자한 독립 증류주, 소주 생산자, 양조장 등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K-SPIRIT 수출을 장려하는 현 시점에서 주류소매면허자를 대상으로 전자 상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곧 한국이 새로운 종류의 맥주, 와인 및 증류주를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건의사항

공정한 경쟁은 모든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

스마트 오더 시스템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점포 수가 많은 편의점으로 소비자 쉐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 시스템이 시장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류 산업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하고 창의성을 키우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류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조성해 왔지만, 주류 산업은 규제로 인해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도태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는 한국 주류 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 또한 잃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주류 산업이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새로운 시도 및 신제품 도입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류소매면허자에게 전자 상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기업은 점점 더 안목이 높아지는 한국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와 넓은 선택폭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류 산업은 전자 상거래 채널을 통해 책임 있는 음주를 지원하고, 특히 음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유해한 음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류 전자 상거래를 확대함에 따라 대중의 우려와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책임 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 연맹(IARD, International Alliance for Responsible Drinking)' 표준<sup>1</sup>과 배송 교육 프로그램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도입을 제안합니다. 당 상의 주류위원회와 회원사들은 관련된 지침과 프로그램을 한국 시장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1. <https://www.iard.org/actions/E-CommerceStandards>

관련	주세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국세청(소비세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 발효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이슈요약**  
 경제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및 준법/집행 가능성은 조세 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에 더하여 주세는 세수의 증가, 책임 있는 음주 정책, 그리고 행정의 용이성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주류에 적용되는 증가세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세는 제품 생산 비용 혹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량세는 제품 가격이 아닌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알코올의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세금 체계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의 음주 트렌드는 알코올 양은 적게 섭취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량세 도입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세금 체계입니다.

종량세 시행이 정부의 세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를 확보하는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종량세 도입 시 증가세에 비해 세율을 쉽게 조정하여 세수 확보에 기여하거나 물가 조절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포장된 상품의 라벨이나 운송 문서에 기재되어 있어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로 인해 정부 관계자들은 규정 준수 여부와 세금 집행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행정 능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주류에 종량세를 적용함으로써 제품 가격이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회피 동기가 줄어들어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 함량에 따른 종량세는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OECD 및 IMF가 지지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모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종량세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주류 세금 체계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발효주류가 주류 소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21년 KOSTAT: 전체 주류 판매액의 60.1% \*주정제외). 그중 현재 종량세를 적용하는 맥주와 탁주가 이미 이미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효주류 내 모든 주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고려할 때, 동일한 주류의 종류(발효주류) 내 제품에 대해 통일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건의사항**  
 ECCCK는 종량세 제도를 발효주류(과실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급 와인과 샴페인 시장을 종량세 제도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한국이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명품 시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발효주류(과실주)로의 제도 확장으로 인해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의 홍콩의 역할과 유사하게 더 넓은 북아시아 시장의 중심 허브이자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량세 도입은 무역 및 유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관광 및 전시회, 광고 및 홍보, 경영, 물류/저장, 컨설팅 서비스 등과 같은 관련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련규정	주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양표시 기준 도입

**이슈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류 업계는 '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경감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제품 포장에 열량 정보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에서 표시하고 있는 1회 제공량당 열량이 아닌 총 내용량당 열량을 주류에 표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2. 표준잔: 술의 종류 또는 잔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단위로, 술에 함유된 순수알코올량(g)으로 표기함
- 3. CEEV (Comité Européen des Entreprises Vins) and SpiritsEUROPE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 및 주류에 대한 영양성분 및 열량 정보는 100ml(g) 당 또는 1회 제공량당 정보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표준잔<sup>2</sup>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증류주 및 리큐르는 보통 '1회 제공량' 단위로 포장되지 않으며 한 번에 한 병을 전부 소비하는 것이 권장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맥주를 마실 때와 위스키를 마실 때의 음용량이 다릅니다. 100ml(g) 및 단위당 정보가 제공되어야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 내용량당 열량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음료 회사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Label(QR 코드)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조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주류 업계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2021년부터 유럽의 주류 생산자들은<sup>3</sup> U-Label로 알려진 QR 코드를 사용하여 와인 및 증류주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수입 주류 업계는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한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선제적으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다른 영양성분 표기 단위로 인해 해당 기술이 한국에 소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표시 정보는 본사 시스템의 자료를 기반으로 각 국가의 언어로 변환되어 제공되며 한국만을 위해 표시 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건의사항**  
 주류 제품에 총 내용량당 열량 정보를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 글로벌 표준에 따라 열량 정보를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유연하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열량 표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e-Label을 통해 제품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양성분 표시 단위 표시를 허용해 주실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합니다. 와인과 증류주 등 모든 주류 회사들이 관리하기 쉬운 e-Label(QR 코드)을 통해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제품 정보, 100ml 또는 1회 제공량당 영양 성분 정보(또는 총 내용량당 정보 형태로) 및 책임감 있는 음주 지침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몰류 허브 이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 및 원산지 규정 재검토

**이슈요약**  
 한국의 높은 안목을 지닌 소비자들은 특히 FMCG(일용소비재) 부문에서 새롭고, 틈새 시장(niche)에 맞게 개별화된 맞춤형 제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대량으로 유통되는 제품과는 달리 최소 주문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기 어려워 몰류 허브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한-EU FTA 직접운송 조항에 따라 특혜관세는 EU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원산지 규정의 직접운송 조항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소량의 제품들은 싱가포르 등 몰류 허브를 통해 제품을 단순 재포장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접하는 데 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국내 브랜드들이 제3국의 몰류 허브를 이용하여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한-영 FTA 개선 논의에서 직접운송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 간의 더 나은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EU FTA 또한 직접운송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단순 재포장 등을 거친 제품이 몰류 허브를 이용하여 배송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 EU 정부가 협상을 통해 한-EU FTA '직접운송' 조항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한-EU FTA(원산지규정)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주류 방송 광고 시 알코올 도수 제한 재검토

이슈요약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방송 광고가 가능한 주류의 알코올 도수는 17도 미만입니다. 17도 미만의 주류는 지상파 TV, 케이블 TV, IPTV 등 다양한 방송 매체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광고 송출이 가능하지만, 17도 이상 주류의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증류주인 소주의 경우 대부분의 브랜드가 알코올 도수 17도 미만으로 방송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브랜드의 높은 도수 제품도 연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17도 이상 주류의 경우 같은 제품(증류주)임에도 방송 광고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WHO는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 to Reduce Harmful Use of Alcohol)'이라는 지침을 통해 음주 폐해 절감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주류 광고의 내용 및 송출 횟수 규제, 후원 활동 규제 등 음주 폐해 저감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음에도, 알코올 도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제언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TV 매체에 알코올 도수나 송출 시간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등 주류 광고 송출 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도 알코올 도수에 대한 광고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 또한 알코올 도수나 송출 시간대에 대한 방송 광고 규제가 없으며, 호주와 일본, 대만과 같이 송출 시간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도 알코올 도수에 대한 주류 광고 규제는 없습니다.

건의사항

주류 광고를 알코올 도수로 차별하는 현행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광고 규제가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광고 내용, 광고 시청자, 광고 송출 시간 등에 중점을 둘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방송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방송통신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김태양  
과장  
화학 위원회

# 화학

## 7

### 총 주요이슈

1. 국외등록을 위한 정부 보유 국내 유해성 자료의 구매

이슈요약

해외 법인에서 해외등록용으로 정부소유 유해성 시험자료를 검토하고 구매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가격 차별과 행정 절차 등의 문제사항들이 있습니다.

- 해외등록용으로 구매 시 기업수가 1~5개인 경우 시험자료 가격의 30%, 기업수가 6~30개인 경우 5% x 기업수, 기업수가 30개 이상은 150%가 요구됨. 반면, 국내등록용의 경우 협의체 단위 또는 개별 구매 시 각각 시험자료 가격의 30%, 5%만 부과하는 것을 볼 때 사용료 책정 상의 명백한 불평등이 존재함. EU의 경우 해외등록용으로 시험자료 판매할 때 독일화학산업협회(VCI) 기준에 따라 sub-license 비용을 포함하여 자료생산비용의 30%를 책정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국내의 해외등록용 자료 판매 비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구매비용 지불방식이 국내 송금만 가능한 '지로' 뿐이기 때문에 해외 법인의 직접 송금이 불가함.
- 구매 신청 시 '공동등록' 혹은 '후발등록' 두 가지 용도만 선택할 수 있어서 다른 용도의 경우 기재가 불가함.
- 정부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자료의 요약본이 제공되지만 요약본 내용이 해외 자료 대비 충분하지 못해 구매 결정이 어려움.

건의사항

판매대상과 구분방식을 포함하여 정부 소유 시험자료의 해외등록용 사용료 산출방식을 국내등록용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시험자료 구매비용의 해외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 용도 선택지를 다양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추가로 시험자료들의 요약본을 자세한 연구 요약 수준으로 보완하거나, 동질성 정보 등 시험자료의 신뢰도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국문/영문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소유 시험자료들의 최소 요약정보를 OECD eCHEM 포털에

제공하여 OECD 회원국 기업들이 해당 시험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동시에 중복지험 최소화 등 OECD MAD에 명시된 GUIDANCE를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정부 보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게재)
관련부처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등록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의 글로벌 조화 및 판정근거의 정당성 제안

이슈요약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사항 중 분류결과에 대한 분류 판정 결과가 물질의 원등록자가 제출한 정보와 다르거나 심사 판정의 정당성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예로 물질 A의 경우 동일한 시험자료를 가지고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U에서는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2로 등록 및 Classification·Labeling·Packaging (CLP) 고시가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구분1B로 분류 및 고시되었습니다.

유해성심사 결과 내 분류를 바탕으로 유독물질, 제한물질이 지정되고 이에 따른 기준함량이 설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제조·유통되는 물질로서 EU에서 이미 유해성 분류가 등록된 물질이 국내에서 다르게 분류 및 고시되어 국가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하위 혼합물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의사항

EU REACH를 벤치마킹한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물질의 원등록자가 제출한 분류정보와 유해성심사 결과가 상이하게 고시되는 경우 심사 및 판정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함께 고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li> <li>•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li> </ul>
관련부처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국립환경과학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연구개발 면제 물질의 사후처리결과보고서 합리화

이슈요약

연간 0.1톤 이상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은 제조자(연구개발용으로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은 자)는 연구개발용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현재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에 대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개발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면제 건에 대해서도 사후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의 경우 n차 이상의 하위 공급망으로써 5년 전 판매·제공한 연구개발용 시료들은 추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구개발 면제 신청 시 사후처리계획서에 반드시 파기계획을 기재해야 하며 사후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선적으로 처리방법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위탁처리계약서 등의 사후처리결과 증빙서류가 요구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증빙이 어려운 사례들이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 고객사에게 제공된 물질인 경우 연구성과물, 연구일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음.
- 운송기관(자동차, 선박 등)의 엔진 테스트를 위한 연료 첨가제의 경우 연료에 첨가되어 엔진 운행시 산소와 열 등에 의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모두 소멸되어 폐기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 작물에 사용하는 요소비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요소분해저해제의 경우 비료와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분해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모두 소멸되어 폐기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건의사항

화평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게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제출 대상 기한을 5년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고객사에 제공되어 사후처리 증빙이 불가하고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미루어 보아 사후처리결과보고서를 현행보다 간소화하고, 자체 소멸되어 처리방법이 없는 경우 면제신청 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사후처리 증빙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5
관련부처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이슈요약**  
 살생물제품 승인 시 향료에 대한 유·위해성 자료 제출 및 면제 조건에서 성분의 함량 기준 설정 요청의 건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및 그 외 구성성분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 2023년도 5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안내문을 통해 살생물물질 외 구성성분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유효한 유해성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시험자료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생물물질 외 구성성분에 해당하는 향료는 구성성분이 매우 많은 혼합물질로서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원료 공급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마련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향료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 유해성 시험 자료를 면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살생물제품에 있어 향료가 매우 소량(보통 1% 이하)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향료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구성성분 역시 매우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해성 시험 자료를 면제받지 못하고, 모든 시험을 실시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도한 규제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향료를 구성하는 성분 중 살생물제품에 기준 함량(예, 0.1%)이상 사용된 성분에 한하여 위해우려물질(Substance of Concern, SoC)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살생물 제품 승인 시 해당 성분의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을 면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li> <li>●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li> <li>● 국립환경과학원의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살생물물질 외 구성성분 인체 유·위해성자료 제출 범위 및 면제 조건 안내문 (2023.05.25)</li> </ul>
관련부처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이슈요약**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영업비밀 물질별 신청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상에서 화학물질을 비공개하는 것은 제품 단위로 승인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산업용 제품의 경우 대부분 매우 비슷한 함량으로 다양한 조성비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제품명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조성비를 가진 제품이라 할지라도 개발 당시의 샘플명과 상업화된 후에 제품명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첨단 기술 제품의 공급망을 고려하여 고객사 간의 영업비밀 누출 방지를 위해 고객사 맞춤 제품명으로 명명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조성의 경우라도, 개발 단계와, 상품화 단계, 각각의 고객에 따라 여러 제품명이 존재합니다.

**건의사항**  
 MSDS 상 비공개 승인을 물질별로 신청, 검토 및 승인하도록 하여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여러 제품에 사용하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비슷한 함량 및 조성비를 가진 제품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비공개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MSDS 비공개 승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인적 및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li> <li>● 동법 시행규칙 제161조 및 별지 제63호 서식</li> </ul>
관련부처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이슈요약**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상 화학물질의 대체명칭 작성 방법 변경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대체자료 기재 승인 명칭(이하 '대체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고시를 준용하여 대체명칭을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해당 명칭 사용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때 기존 환경부 고시의 명명법에 따르면 원래의 화학물질 명칭을 유추하기 쉽고, 이를 활용하여 대체명칭 작성이 불가능한 고분자 물질이 다수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 명명법에 따른 고분자 대체명칭은 복잡하고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근로자에게 정보전달 효용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최근 환경부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총칭명의 명명방법' 별표에 아래의 호를 신설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대체명칭 작성 시 아래 개정 사항을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가 해당 혼합물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유럽 연합의 '혼합물 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명칭 사용 신청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EU 등 자국 법령 시행 사례(국제기준 등)

EU 'How to prepare a request for use of an alternative chemical name for a substance in mixture' 내 5.2. Section 1 General Information - How to fill in the suggested alternative chemical name for the substance (p.25) '혼합물 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 명칭 사용 신청에 관한 지침'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li> <li>•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7조</li> </ul>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p>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p> <p>개정</p>

협의하여 환경부로부터 등록 면제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 제150조, 제151조 제1항,</li> <li>•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li> </ul>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p>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p> <p>개정</p>

7. 이슈요약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조사  
 면제사항의 중복규제  
 해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유사한 규정 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에 신규화학물질 등록으 로 존재하여 중복규제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중복규제를 해소하고자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산안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화평법 제11조의 등록 면제와 산안법 시행규칙 제150조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에 대한 차이가 있어 산업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복규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면제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조사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건의사항

산안법 시행규칙 제150조를 삭제함과 동시에 제147조 제1항을 개정하여 화평법 상 등록 및 면제를 받은 경우 산안법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조사보고서 제출하였거나 면제를 확인 받은 것으로 같음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산안법의 조사보고서 제출 제외 확인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두 부처간

# 화장품

## 7

### 총 주요이슈

1. 규정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제도 재검토

#### 이슈요약

현행 화장품법은 20여년전 약사법에서 유래되어 제정되었으나 현재 세계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화장품 산업환경을 고려했을 때 변화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화장품의 효능을 사전에 승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화장품의 효능 관리 책임이 기업에 있고 시장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매우 다른 점입니다. 또한 기업의 제품 개발 속도와 다양성이 중요한 화장품 산업에서는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평가 및 실증제도에 대하여, 모니터링 제도나 역량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규제와 조화된 규제 환경하에, 한국 화장품 산업이 제품 개발 속도 및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유효성을 민간 실증제도를 기반으로 입증한다는 조건하에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제 도입

#### 이슈요약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회사 명과 그 소재지 정보를 제품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품질 및 안전 관리, 유통, 판매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화장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표시 기재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화장품에 제조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적인 조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OEM 독과점과 유사/복제 제품 이슈를 유발하여 브랜드 중심의 산업성장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상 요구되는 국문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안전성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나, 해외 제조사의 주소까지 기재하는 것은 원산지 기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한글로 적혀 있으므로 표시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 건의사항

이미 기재된 책임판매업자 정보를 통해 제조사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화장품 제조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표시제의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 제10조 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4항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화장품 표시 광고의 표현 범위 확대

#### 이슈요약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등의 금지표현 예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지표현의 경우, 문맥 상 화장품 정의에 부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표현으로 분류되어 기업에서 표시 광고에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표현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디톡스(모공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클렌징 제품에서 허용 필요)
- 홍조 홍반 개선(보습 및 진정 작용을 통한 붉은 기 완화는 화장품 정의에 부합)
- 유익균의 균형 보호(여성청결제 때문에 금지된 표현이나, 최근 개발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화장품에서는 사용 가능한 표현으로 생각됨)

#### 건의사항

전체 문맥 상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와 최신 화장품 개발 트렌드를 고려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금지표현을 재검토하고, 금지표현에서 삭제 또는 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추가해주시길 것을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기준의 오차 허용치 적용

**이슈요약**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안전과 국내외 위해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설정된 제한 기준으로, 동 기준에는 오차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허용 오차를 설정하고 있고 실험 오차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료 기준에 부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실제 공정에서 오차 허용치를 설정하는 것을 참고하여 제조 공정 및 검체 검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오차 허용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수입화장품 해외제조소 사후관리 점검 기준 완화

**이슈요약**  
2013년도부터 식약처는 국내 품질검사가 면제된 수입화장품 해외 제조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 공장들의 경우 3년 내 2개 제조소 점검 기준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사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실사의 기준이 되는 국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에 따른 국내 제조소의 경우도 3년에 1회 기준으로 재실사를 받고 있으므로, 유럽 내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사 점검 기준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수입화장품 해외 제조소에 대하여 식약처로부터 한 차례 이상 현지 실사를 완료한 업체의 경우 재실사의 기준을 '3년 내 1개 제조소' 점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유예기간 추가

**이슈요약**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규칙(환경부령 제984호)이 2022년 4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 규칙은 제조·수입·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2023년 6월 현재까지 규정을 지키기 위한 환경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업체에서는 개정 규칙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업체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되어야 개정 규칙을 지키기 위한 시설, 설비, 인력, 절차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정 시 제조·수입·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유예기간이 필요했던 만큼, 환경부의 세부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업체에서 실무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2년의 유예기간을 제공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부처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에서 '재활용 포장재'는 적용 제외

**이슈요약**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 제품 등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포장재에 1) 포장재질에 대한 분리배출을 표시하고 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재에 표시하고 있으며 3)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따라 매년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출고/수입 실적을 보고 및 그에 따른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있어 추가적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포장재에 대한 순환이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포장재에 대한 개선을 권고, 미이행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며 '포장재 순환 이용성 평가' 대상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동일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한국만을 위해 포장재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포장재의 변경을 위해서는 부자재 공급 업체 변경, 생산 공정 변경 등 많은 자원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의사항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 '포장재 순환 이용성 평가' 대상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제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원순환기본법
관련부처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김태양  
과장  
에너지 환경  
위원회

# 에너지 환경

## 6

총 주요이슈

1. 육·해상풍력을 위한 월별(혹은 분기별), 전압별 전력 계통 및 연계 관련 정보 공개 방안 필요

#### 이슈요약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서 공개된 변전소 및 전력 계통 연계 정보는 실시간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들이 사업 준비 기간 동안 변전소 정보 변동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도별 변전소 및 송전망 여유 정보를 주기적으로(월별 혹은 분기별)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협업을 통해 공동 접속설비의 연계 용량이 500MW를 초과하는 경우 345kV 연계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사업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건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월별(혹은 분기별), 전압별 변전소 및 송전망 여유 정보, 연계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전력 계통 정보 부재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부족한 계통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이용률, 부하율 산정 기준, 실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의 허수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계통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한국전력공사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완화

#### 이슈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신청자의 재무능력 심사 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8월 1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해상풍력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시장에서 개발자의 재무 능력에 대한 사전 심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나 발전사업허가가 해상 풍력사업을 개발하는데 필수로

진행하는 29개의 인허가 중 첫 번째 허가임을 고려할 때 개정된 내용은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과도한 요구사항입니다.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출자 증빙 서류/투자확약서

발전사업허가는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많은 인허가 중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하는 인허가이며,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통한 수익 확보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발전사업허가 이후 최소 2년 소요) 이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허가 신청 단계에서의 투자확약서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자의 납입자본금이 총사업비의 1%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높은 사업비와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기간으로 인해, 한 개 또는 다수의 개발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단계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납입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총사업비의 1%는 상당한 금액이며, 이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납입자본금 보유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3) 해상풍력 준비기간 8년

‘발전사업허가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경우, 공사계획인가기간 5년 및 준비기간 8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 100MW 미만, 대규모 사업의 경우, 1GW 이상의 사업이 존재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른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일괄적으로 준비기간을 8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용량별 사업 준비 기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완화 - 투자의향서 인정

발전사업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확약서가 아닌 기존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서 수용되었던 투자의향서도 인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완화 - 신청자의 납입자본금 비중 하향 조정 및 재무조달 능력 위주의 검토

현행 총사업비의 납입자본금 기준비율을 해상풍력의 경우 0.5%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신청자의 재무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수목적법인의 납입자본금이 아닌, 신청자 최대주주의 재무 조달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3)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완화 - 해상풍력 준비기간 조정/세분화

사업 규모에 따른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용량별 준비기간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 (A) 500MW 미만: 8년
- (B) 500MW 이상, 1,000MW 미만: 9년
- (C) 1,000MW 이상: 10년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육상풍력  
전기사업허가의  
주민수용성  
심사기준 필요

이슈요약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인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아래와 같이 추상적인 기준만 제공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세부 허가기준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위와 같은 추상적인 기준을 사유로 지자체별 요구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 기관의 담당자별로도 판단이 각기 달라 발전사업 개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일정 지연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성 제고 활동은 발전사업허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요구되고, 허가 후 4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행위허가 승인 후에도 이러한 활동이 장기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발전사업이 장기화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개발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대표자변경, 전입/이사로 인한 주민변경, 보상규모에 대한 주민 간 이해충돌 등이 발생하고, 최초 수행한 (4~5년 전) 수용성 제고 활동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기대했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상황이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수용성에 대한 전기위원회 안내 문건에 따르면 주민수용성 문제는 발전사업허가 이후에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 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에 판단될 사안으로, 개발행위 신청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문건에서는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발전사업허가 단계보다 지자체가 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현실에 맞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육상풍력에 한하여 주민수용성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통합하여 착공 및 운영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 제고 활동이 되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의 평가항목에서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여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2항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의거한 주민 의견 수렴 활동(즉, 지역신문 공고) 수행 여부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서 징구 활동, 공청회 등의 적극적인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은 전기위원회의 안내문과 같이 현지 계획이 수립되는 발전사업허가 이후 개발행위 신청 단계에서 이뤄지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또한 지자체 구분 없이 공통 적용가능한 항목(예, 주민 동의서 징구는 대상 주민의 구체적 기준, 동의서 양식 지정, 전체 주민 중 몇 % 동의 시 최소 조건 충족 등)들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이드로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 조 제3 항 제1 호</li> <li>•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li> </ul>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보급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규정 개선

### 이슈요약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해상풍력 개발 절차 시 꼭 필요한 인허가 중 하나이나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 (1)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동의 관련

2022년 7월 공유수면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신설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이후, 몇몇 허가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 신청자에게 식별된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 및 식별 절차가 모호하고 어업인의 경우, 아무 증빙자료 없이, 수협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2) 과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비용 관련

현행 공유수면 점용·사용 비용 산정 기준은 부유식 해상풍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내 면적 산정기준에서 앵커부이(앵커부표)에 대해서는 '계류부표(부이)의 중심으로부터 클럼프(앵커고정부착시설) 끝단 까지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과 앵커케인 및 해저 송유관의 면적 전체'를 직접점용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유식 해상풍력에 사용되는 계류선의 길이는 수심에 따라 600미터에서 800미터에 달하나, 그 중량으로 인해 계류선 길이의

대부분의 구간이 해저면 혹은 해저면 하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현행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적용 시 과도한 점용 사용 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 (3) 허가기관 관련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관은 12해리 안쪽 해역은 관할 지자체이고, 12해리 바깥 해역(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각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개발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연안으로 이어지는 해저 송전케이블 등을 고려하면 각 관할 허가기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나누어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건의사항

이에 각각의 어려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1)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동의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검토 시, 이해관계자 식별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2) 과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비용 관련

해상풍력발전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점용 및 사용 면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블레이드 회전 반경 및 계류선, 해저케이블 등의 직접 설치 면적에 한해 직접 점용으로 하여 과도한 조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점용 및 사용 비용에 대한 기준이 되는 최인접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과 관련하여 지역별 편차 및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가격 산정 체계를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 (3) 단일 허가기관 선정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신청 검토를 위해, 해저케이블 및 발전단지 공유수면 점용 사용을 검토하는 단일 허가기관 선정이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li> <li>•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li> <li>•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2] 제1호</li> <li>•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별표4] 제2호</li> </ul>
관련부처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개선

### 이슈요약

해상풍력과 같이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도입을 통해 풍력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사인 발전사와의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세부 규정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풍력 경쟁입찰계약 고정가격 선정 사업자는, 100MW 초과 해상풍력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먼 바다에서 개발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60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고려할 때, 대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관련 공급망 및 인프라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상당수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풍력 경쟁입찰계약 고정가격 선정 사업자 중 500MW 이상 해상풍력 또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사용전검사 완료를 위한 기간을 최소 72개월 이상 부여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li> <li>•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li> <li>•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li> </ul>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보급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확대 적용

이슈요약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참여대상이 되는 범위를 10km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해상풍력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주민참여 대상의 범위를 넓혀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투자와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 적용하여(100,000kW 이상 해상풍력 설비의 경우) 주민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10km로 확대한 것에 대해 고무적인 지원인 것은 분명하나, 다도해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해상 지형 여건과 대형화로 인해 먼 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는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특정 조건에 따라 주민참여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100,000kW 이상 해상풍력설비의 경우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육지나 섬이 없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 별표2의 2.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은 특수 조건에 따른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 (1) 해상풍력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육지나 섬이 없을 시, 반경 10km가 넘더라도 육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내 '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섬이 위치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확대 적용.
- (2) 해상풍력설비의 특성상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운영항만(이하 '지원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며, 본 시설은 발전소 생애주기 이상인 약 30년간 운영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육지에 위치한 대규모 지원항만이 아닌 해상풍력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유인도 '섬'에 위치한 지원항만의 개발은 어항개발법에 근거하여 개발되나 별도의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항만이 개발되는 '섬'이 위치한 시·군·구 또한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발전원	발전사업 설비용량	지역의 범위 개정 제안
해상풍력	100,000kW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시·군·구(단,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발전기가 위치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신규: 10km이내에 섬이 없는 경우, 육지를 향한 직선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섬이 위치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혹은 가장 가까운 섬에 지원항만(O&M)이 있는 경우 그 해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육지에 위치한 지원항만 제외)나 해양에 설치되는 송전선로가 경과 또는 양육하는 시·군·구 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한다.) 2. 생략

관련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 별표 2의2.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보급과,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패션 및 유통

## 7

### 총 주요이슈

#### 1. 금속장신구 납 함량 기준

##### 이슈요약

환경부는 2021년 12월 29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개정을 통해 페인트와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되는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 기준을 0.06%에서 0.009%로 강화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수입 금지는 2024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지칭하고 있는 금속장신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금속장신구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EU 및 다른 국가(예를 들어 미국, 영국, 중국, 브라질 등)의 금속장신구 납 기준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건의사항

해외 국가들과 같이 페인트와 금속장신구에 대한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국제 기준과 통용될 수 있도록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함량 기준에 대한 국내 규정을 개정 전과 같이 0.06%로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관련부처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2. 유아용 섬유 제품의 안전확인 시험결과 상호 인정에 대한 시험기관간 계약

##### 이슈요약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용 섬유 제품의 안전확인 시험 및 검사기관은 국내 5개 기관에 불과하고, 해외에서 이미 상당한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들도 국내 기관에서 추가적인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제7항'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 기관과 제품안전확인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재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CCK는 이 안건에 대해 EU와 한국 당국 간에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 건의사항

법에 허용된 제품안전확인 시험·검사 결과 상호 인정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정적,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유아제품에 대한 국내 중복 안전 확인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기관이 국내 기관과 상호 인정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의 범위 및 내용 검토 시 해외 기관의 위치 등에 있어 국가 간 차별 없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 측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기대하며, 검토 후 평가 결과 및 그에 대한 자세한 판단 기준이 산업계 및 시험기관에 안내되기를 권고합니다.

관련규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3. QR코드 사용을 통한 상품 정보 표시

##### 이슈요약

오늘날,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국적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기업들은 기존의 종이 라벨을 줄이거나 없애고 QR코드를 사용해 상품 및 기업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 부처 또한 의약품과 식품을 대상으로 이미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의약품이나 식품의 용기나 포장재에 기재하는 상품의 정보를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중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는 부속서에 따르면, QR코드의 기입을 통해 표시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는 오직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부분으로, 나머지 사항은 부속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품군(가죽제품, 금속장신구, 선글라스 등)에 대해서도 QR 코드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디지털 전환이라는 현재 흐름에 발맞추어, 또한 기업의 환경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의류 제품의 표기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기함에 있어 QR 코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각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제품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관련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제품의 수선 및 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

이슈요약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16]에 따르면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경우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을 수선하는 등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된 소량의 전기용품의 경우 자사 제품만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선택된 장비가 대다수인데, 이는 판매나 대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안전인증 혹은 안전확인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건의사항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전기용품이나 기기는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판매나 대여 목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한정된 장소에서 엄격한 안전 조건 하에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므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면제 조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해주시길 것을 건의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6]

10.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수선 및 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관련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제품의 수선 및 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이슈요약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자재는 경우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을 수선하는 등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된 소량의 기자재의 경우 자사 제품만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비( 예를 들어 보풀제거기, 초음파세척기, 전동봉기, 전동공구 등)가 대다수인데, 이는 판매나 대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자재로 분류되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건의사항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기자재는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판매나 대여 목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한정된 장소에서 엄격한 안전 조건 하에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므로 이를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에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가정용 섬유제품 취급상 주의사항 생략

이슈요약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르면 '7.3.1수의류, 손수건, 타올류, 모기장, 덮개류, 가방류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탁 및 다림질, 드라이클리닝의 처리를 하지 않는 품목이거나 위의 주의사항을 표기하기에 제품의 크기가 작아 제품에 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품목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속서에 표기된 품목 외에도 세탁 및 다림질, 드라이클리닝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제품 크기가 작아 주의사항을 표기하기 힘든 품목들이 있는데, 이는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취급상 주의사항 생략 가능 여부를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가정용 섬유제품 중 모자류, 벨트류, 헤어밴드류, 장갑류, 넥타이류, 양말류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기에는 제품의 사이즈가 작거나 세탁 및 다림질, 드라이클리닝의 처리를 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도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품류를 확대 적용해주시길 것을 건의합니다.

부속서1, 7.3.1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류, 모기장, 덮개류, 가방류, 모자류, 벨트류, 헤어밴드류, 장갑류, 넥타이류, 양말류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관련규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더불어, '전시, 시연, 공연 등'의 목적을 가진 행사에 사용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제10호의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의 경우 전시 물품과 집기가 운송상의 사유로 별도선적 및 통관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관세 감면이 인정되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부처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브랜드 전시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 집기에 대한 관세 감면

이슈요약

패션 브랜드들은 단독으로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대중에게 제품의 디자인과 예술성을 알림으로써 미적 수준 및 예술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회에서 선보이기 위한 상품 및 집기들은 한국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된 후, 일정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이동을 위해 수출됩니다.

최근에는 브랜드의 단독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나, 지난 40여년 동안 국제무역의 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지 않아 1984년도의 규정대로 이러한 브랜드의 전시가 관세 감면이 가능한 전시회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84. 3. 31 관세청 총괄1275-583호의 전시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시회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적인 장소에서 단일 회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전시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관행상 전시를 위한 상품과 물품 및 집기는 혼적화물에 한해 면제로 인정되고 있는데 상품들은 주로 항공을 통해 수입되며, 물품 및 집기(디스플레이, 쇼케이스)는 부피 및 운송비를 고려하여 해상운송으로 수입됩니다. 그러나 혼적화물로 전시 상품과 같이 수입되지 않는 물품 및 집기의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제6호의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1년 이내에 물품을 재수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1항

건의사항

현행법상 전시회를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행사장소가 공공장소이어야만, 전시회로 인정을 하여 관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전시'의 개념 범위 확장 및 지침 제정을 건의합니다.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적인 공간(예를 들어 일반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백화점, 거리, 갤러리, 호텔, 아트스페이스 등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시 또한 행사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감면 가능한 전시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 식품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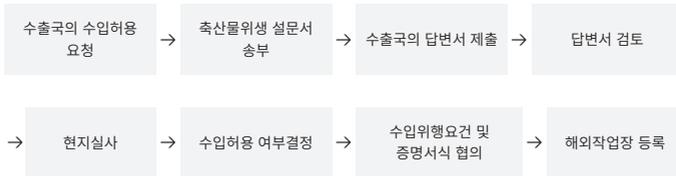
### 총 주요이슈

#### 1. 축산물 가공품의 '수입위생평가' 검토 소요 기간

##### 이슈요약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식육·포장육·원육·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한국에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순서 등에 따라 수입위생평가의 절차를 개시하고 그 사실을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입위생평가 요청 건수, 상대국 정부의 대응 등으로 인해 상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절차 중 국가 등록의 경우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국가 간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평가 절차



한국에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의 축산물(예: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통해 수출 국가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개별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 등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2018년에 등록 절차를 시작한 국가의 등록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축산물가공품의 국가 등록을 위한 수입위생평가의 법정 최대 처리 기간(예: 3년 이내, 수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1년 추가 가능)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를 통해 수입위생평가 절차에 대한 양측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완료 시점을 예측하여 국가 간 교역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2. 재생 원료 사용 식품 용기 허용 기준 마련

##### 이슈요약

환경부에서 투명PET를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마련하였고,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PET를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2022년 2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중 검증체제를 마련하여, 환경부는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 페트병을 중간원료(flake)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하고, 식약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EU에서도 안전성 심사 관련 기준<sup>1)</sup>이 마련되어 많은 제품에 물리적 재활용 PET flake가 적용된 용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된 투명PET의 선별 및 재활용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재활용PET flake가 적용된 완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건의사항

EU 등 해외에서 제조된 수입식품 완제품에 재활용된 PET flake가 적용된 경우, 해당 재활용 PET flake의 안전성 심사 자료 등을 제출하고 환경부와 식약처가 이에 대한 동등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국제기준 및 수출국의 관련 제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간 동등성을 인정하는 논의도 검토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 Article 5 of the Regulation (EC) No 282/20084 of the Commission of 27 March 2008 on recycled plastic material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 and Articles 8 and 9 of the Regulation (EC) No 1935/200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on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관련부처	식품위생법-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환경부(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 신규

3.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

이슈요약

2021년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에 앞서 2020년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에 명시된 사업자로써,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i) 날개 제품이 2개 또는 3개로 포장된 상태로 제조되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ii) 국내 수입 시 수입하는 자 또는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별도의 재포장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국내 규정상 재포장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국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가 재포장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해외제조업소에서의 생산 시점에서부터 2개 또는 3개 날개 제품이 묶여 포장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제조업소에서 2개 또는 3개 날개 제품을 묶어 포장된 제품은 한국으로 수출이 불가하지만 1개 또는 4개 이상(5개, 6개, 7개 등)의 날개 제품을 묶어 포장된 제품은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줄인다는 환경부의 취지에 어긋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의사항

해외 제조단계에서부터 2개 또는 그 이상 묶음 포장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포장 상태로 생산되어 수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국내에 단순히 수입하여 판매하고 국내에서는 별도의 재포장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재포장 금지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환경부의 합리적인 법리해석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관련부처	환경부(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박안숙  
이사  
헬스케어 위원회

# 헬스케어

## 10 총 주요이슈

1. 혁신 가치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이슈요약

혁신 신약은 치료제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의 생존을 연장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질병의 악화로 고통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중증,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혁신 신약 접근성이 향상되면, 질병의 완치 및/또는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혁신 신약 개념의 확장에 따른 제도 변화 필요성  
최근 개발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면역질환 치료제, 표적 치료제 등은 약제의 생물학적 작용기전이 가진 확장성으로 인해 다양한 적응증을 타겟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기존의 법과 정책은 새로운 물질의 개발만을 신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적응증을 타겟으로 하는 과학 혁신의 변화에 발맞추어 약가 정책도 신규물질이나 기술에서 확장하여,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연구와 혁신에 대해 적절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신약 평가 제도로 운영중인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로 인해 신약의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었으나, 등재 이후의 재평가와 적응증 추가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아 신약의 가치 반영은 물론 환자 접근성이 더 확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소아, 소수환자에 대한 연구/혁신의 가치 인정을 위한 제도 변화 필요성 및 국제적 변화

소아는 성인 대비 임상시험 수행이 어렵고, 대상환자 수가 적어 소아 적응증을 추가하거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데 업체에 많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아 대상 신약의 오프라벨(off-label) 사용이 빈번합니다. 소아 대상 신약은 질병으로 인해 성장기에 겪는 신체적, 정신적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기에 발생하는 소화기성 유전질환은 조기에 치료해야만 소아의 성장 저해를 막을 수 있으며, 소아기에 발생하는 만성질환(예: 아토피피부염)은 조기에 치료해야 평생에 걸친 질병부담 및 치료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예: 영국, NICE)에서는 이미 경제성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약제에 대하여 소아를

1.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대상으로 한 급여 기준의 확대 시, 소아연령에서 비용효과성 평가 우대의 필요성, 연령 간 형평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허가와 동시에 급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3. 국내의 혁신 신약 가치 평가 절하로 인한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 제한
  - ① 한국의 신약 접근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이웃 나라인 일본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G20국가 평균보다 낮습니다.<sup>2</sup>
  - ② 위험분담제를 통해 혁신 신약으로 등재된 이후, 다양한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사후 약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 없이 다른 나라 제도와 단순 비교(예: 약가 등재 시 약가 차이 간과, 국가별 제도의 특수성 간과) 및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강화되고 있어 혁신 신약의 약가가 사후 관리 단계에서 여러차례 인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신약의 코리아 패싱 현상을 가속화시켜 국내 환자들의 혁신 신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③ 위험분담약제의 경우 환급 이후의 실제 금액이 아닌 환급 이전의 표시가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실제 부가세의 비율은 법률에서 정한 1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부가세를 이중 부담하여 결론적으로 신약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 건의사항

혁신 신약의 개념의 확장에 따른 제도적 변화

##### 1. 적응증별 약가 제도 시행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연구는 신약의 개발과 동일하게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최근 다양한 적응증을 타겟으로 과학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여러 외국에서도 적응증별 약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적응증별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약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되,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먼저 위험분담 계약 중인 약제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 2. 혁신신약 가치 보장제도 개선

기존 치료약제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새로운 물질 또는 작용기전의 약제, 치료적 동등한 위치의 약제가 없는 경우,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국내 GIFT,<sup>3</sup> 미국 BTD,<sup>4</sup> 유럽 PRIME,<sup>5</sup> 일본 SAKIGAKE<sup>6</sup> 등으로 허가 받은 약제들에 대해 i) 탄력적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sup>7</sup> 임계값 적용, ii) 비교약제 선정 시 최고가 약제 반영, iii)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등 혁신 신약 가치 보장제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3. 위험분담제 기준확대 건의

- ① 기 평가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이면서 예상되는 추가청구액이 15억 미만일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 및 약가 인하 면제를 건의합니다.

- ② 위험분담 계약기간 중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 및 환급률, 캡(cap) 및 예상청구액 등 주요 사항이 조정되어 최초 위험분담 계약이 변경된 경우, 위험분담 계약을 급여 확대 일자를 기준으로 5년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③ 성인 대상 연구에서 명확히 비용효과성이 검토되어 이미 급여 등재되었으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약제는 급여 확대 시 비용효과성 평가절차 면제를 건의합니다.
  - a. 소아기에 발병하여 성인기로 이어지는 만성질환으로 인정되어 성인에서 소아로 연령 확대된 경우
  - b. 해당 연령에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
  - c. 소아 임상을 통해 연령 별 용법 용량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 d. 기존 치료 대비 임상 성과가 우월한 경우(효과 및 안전성, 삶의 질의 유의미한 개선)

혁신 신약의 가치 평가 절하에 대한 제도적 개선

1. 위험분담제 부가세 이중 부과 개선
 

정부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위험분담약제도 법률에서 정한 10% 부가세가 실제가 기준에서 납부될 수 있도록 부가세법 또는 위험분담제 환급제 절차/규정 개선을 건의합니다.
2. 위험분담약제 재평가 개선
  - ① 위험분담계약 기간만료 평가는 성과기반 위험분담약제로 한정하고 제품별로 사전에 계획된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 ② 재정기반 위험분담약제는 경제성평가를 이미 거쳐 재정 리스크를 해소하고 등재된 RSA(위험분담제) 해당 약제입니다. 이에 대한 재평가 및 재재평가의 경우 형평성, 예측가능성, 지속가능한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반복적인 비용효과성 평가 및 공단 약가 협상을 생략하고, 계약연장 여부 확인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 ③ 제약사가 계약 종료료 희망할 경우 별도의 재평가 없이 계약종료료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④ 재평가시 장기간 실제 환급된 정보를 토대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선에서 세부 유형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제 청구액과 예상 청구액 차이가 클 경우에도 위험분담 유형 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의합니다.
3. 사후관리제도 통합 운영
 

혁신 신약을 공급하고, 환자에 대한 신약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영향만을 고려한 약가 정책에서 탈피해 혁신 신약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약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단일 약제에 대하여 여러 약가 인하 기전이 중복 적용되는 폐단과 이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예측 가능하고 단순 명료하도록 정비 및 통합 운영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 2023년 4월 PhRMA가 발간한 <Global Access to New Medicines Report>에 따르면 2012-2021년까지 시장에 출시된 총 460개의 신약 가운데 공적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은 의약품은 일본 48%, G20국가 평균 28%, 한국 22%).  
3. 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  
4.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5. PRiority Medicine  
6. 先駆的医薬品 (선구적의약품)  
7. 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4.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 개정에 대한 재고

PVA 제도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면 대체 약제의 약가가 낮아지고, 해당 약가를 근거로 평가되는 혁신 신약의 약가 또한 연쇄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약 가치 보상안과 상반되는 결과로, 환자 접근성이 낮아지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PVA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현재 PVA 제도 운영에 있어, 공급중단 등 이슈로 일시적 사용량 증가분은 복수의 유사제품이 있더라도 적절한 보정을 통해 해결하여 한국에 안정적으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7조 약제에 대한 평가</li> <li>•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li> <li>•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1.8.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을 적용한 약제에 대한 평가 기준</li> <li>• 약가협상 지침</li> <li>•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li> </ul>
관련부처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건강보험공단,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대상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

**이슈요약**  
위험분담제(환급형 포함)는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한해 적용됩니다. 희귀질환 특성상 소수의 환자수 및 질환 진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치료제 대상 질환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대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환자의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거나 중요 장기의 기능을 비가역적으로 저하시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질환, 중증의 만성질환 혹은 희귀질환의 경우, 질환 및 임상 연구 설계의 한계로 인해 치료제의 생존율 개선 효과 대신 대리평가변수(surrogate endpoint) 개선 효과만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려면 경제성 평가를 통해 생존 연수 증가(Life Year Gain)를 통한 ICER 값이 임계값보다 낮음을 증명해야 하나, 만성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질환, 중증의 만성질환 혹은 희귀질환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임상 연구에서 생존율 개선효과 자료를 요구하고 타 질환과 동일한 ICER 임계값을 적용함으로써 인해 희귀질환 신약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대상 환자 소수

기준이 기본조건으로 변경되었고, 소아에 사용되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지속적/비가역적으로 현저한 악화를 초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질환의 특성상 경제성 평가를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에 어려움에도 여전히 현행 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평가 시 심평원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긴급도입의약품에 대해 대체 약제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동제 제도 특례 적용이 어렵고, 대상 환자군이 아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로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평가 시 급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발생합니다.

고도 비만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수술 요법이 일부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고, 치료제의 경우 급여 절차 신청 시 평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 받았으나 아직도 다른 (만성)질환 대비 치료 접근성이 낮은 편이므로 최선의 치료 효과를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1.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  
산정특례 질환이 아니더라도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경우 위험분담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 비용효과성 임계값 탄력적 적용  
임상연구를 통해 생존율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성적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거나 비가역적으로 중요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증 질환, 중증의 만성질환 혹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 검토 시 예상되는 생존 연수 증가를 대리평가인자(surrogate factor) 개선을 통해 인정하거나, 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ICER 임계값을 적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3.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개선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 질환 유형 및 대상 환자 수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고 대체가능한 치료법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가 아니더라도 서서히 또는 비가역적으로 현저한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치료제 및 국가필수의약품 중 항진균제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진행성의 심각한 질환'의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대상 환자 수: 소수의 환자 기준을 삭제하거나, 인구 10만명 당 1명 기준인 500명의 환자 수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대체 요법 판단 기준: 대체 가능 요법 또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요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4. 극히귀질환 치료제 평가 방법 개선

극히귀질환 치료제의 신약 급여 평가 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긴급도입의약품은 대체약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며, 질병코드가 없는 극히귀질환의 치료제가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면 이와 동시에 자동으로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적응증이 다수인 희귀질환 치료제는 일부 적응증만 비용효과성 또는 등재 특례제도(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적응증에 한해 등재 가능하도록 건의합니다.

5. 비만관리 환경 조성 및 치료 접근성 개선

1차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지원에 ①고도비만 교육상담 건강보험 적용과 ②비만 집중관리 가이드 라인 개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차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수립 시 고도비만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재고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7조(약제에 대한 평가)</li> <li>•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li> <li>•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1.8.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을 적용한 약제에 대한 평가 기준</li> </ul>
관련부처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희귀 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 확대

**이슈요약**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전수 신생아 선별 검사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선별)' 항목을 급여한 바 있습니다.<sup>8</sup>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 질환은 방치하면 정신지체와 심신장애가 되거나 조기에 사망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조기진단이 권고되는 '치료제가 있는 희귀질환'의 상당수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급여화 이후 5년간 개정이 없었으므로 희귀 질환자들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의사항**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되어 평가 완료된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 질환(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조기 진단을 권장하는 치료 가능한 리소좀축적병(Lysosomal storage Disorders, LSD)인 폼페병, 고셔병, 뮤코다당증(MPS) 파브리병 등에 대해 신속한 급여화를 건의합니다.

미국의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가 생명을 구한다 법'과 같은 신생아 선별검사

공공 보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정책의 지속적 개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부처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현재 운영중인 약가제도의 절차 개선

**이슈요약**  
1. 급여기준 확대 절차 개선  
현재 급여기준 확대가 필요한 약제의 경우, 명확한 평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 후 급여기준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중 급여기준이 설정된 제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심평원 검토보고를 사전 심사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다음 급여평가 단계 진행도 더딘 상황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약제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신속한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추가되는 새로운 적응증이 희귀질환인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평가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약가합의서 이행관리 보고 절차 개선  
신약 및 사후관리 대상 약제들의 약가 합의서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이행관리 대상 약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공단의 보고 절차가 여전히 확립되지 않아 기업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 급여기준 확대 절차 개선  
① 의약품의 급여기준 확대의 경우에서도 신약과 동일하게 급여 평가기간을 '2.4. 긴급·조속 도입이 필요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평가절차(신약 등 협상대상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심평원장 공고)'에 희귀의약품 100일 이내, 그 밖의 의약품 150일 이내로 명문화하여 평가절차 및 기간 투명화를 건의합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설정된 경우에는 복지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받은 이후 신약과 동일하게 복지부에 최종 보고하는 절차로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③ 현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 3]에 근거하여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 중 상한금액 조정대상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약물이 건강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기준이 설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한 복지부의 최종 고시를 건의합니다.

- ④ 급여 기준 회의 이후 검토된 내용에 대한 평가서를 해당 제약사에 공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현재는 '보고되었음' 정도의 형식적인 문서만이 보고됨).

2. 약가합의서 이행관리 보고 절차 개선

기존 온라인 플랫폼<sup>9)</sup>의 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 활성화를 건의하며, 담당자 별 상이한 요청사항 및 합의사항 이외의 과도한 정보 요청을 방지하고자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한 모든 담당자 간 통일된 약가합의서 이행관리 보고사항 및 절차 수립을 건의하며, 보고 주기 역시 분기 별 혹은 반기 별 보고를 제안합니다.

또한, 식약처와 공단 간 업무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관련 항목: 의약품 재평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 통지 의무 및 조치 사항/품질관리 의무 및 행정처분 시 조치사항/효능·효과 변경·추가 통지의무)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건의합니다.

9. medicare.nhis.or.kr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약 등 협상대상약품의 세부평가기준</li> <li>•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li> </ul>
관련부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혁신적 백신의 가치 인정 및 신규 도입 절차 개선

이슈요약

신규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i)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 임상적 유용성, ii)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경제성평가 결과 등 비용효과성, iii) 대상환자수, 예상사용량, 기존 약제나 치료법의 대체효과 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iv) 제외국현황, v) 기타 보건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하여 등재여부와 상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공급가격 결정지침'의 일반원칙에 따라 백신의 추정단가는 백신의 효능, 안전성, 접종의 편의성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여전히 신규 도입백신 가격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가격 산정 과정에서 제조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마련된 국가예방접종 신규백신 도입평가 매뉴얼은 국가예방접종백신에 들어 갈 가능성이 있는 후보백신을 선정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신규 백신 도입과 사업시행에 있어 가장 주요한 파트너인 기업은 6단계로 진행되는 해당 매뉴얼의 절차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학과와 보건당국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한계로 인해, 신규백신 도입이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견인하는 기업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도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대응과 준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며, 실제도입에 있어 공급량, 공급시점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혁신적인 신규 국내 백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되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백신의 가치가 명확하게 평가되고 혁신성이 반영되며, 또한 그 과정이 제조사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연령별 특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혁신적 백신 도입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신규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할 경우에도 경제성평가 결과, 재정영향, 기존 백신에 대한 대체 효과, 안정적인 수급 가능성 등 백신 만의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통한 가격 산정으로 종합적인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백신에 대한 가격 결정 지침을 체계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및 가격 산정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하여 제조사에 일정 기간 내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신약이 들어오면, 질병청과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에서 빠르게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업데이트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현재 공개하는 자료 수준보다 아래 내용과 같이 데이터를 좀더 세분화 및 구체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 Td<sup>10</sup>와 Tdap<sup>11</sup>의 개별 데이터 제공(두 제품은 다른 제품군이나, 현재 데이터가 섞여 있어 정확한 수요 판단을 하기 어려움)
- 지역별, 접종 연령별 보다 세부적인 자료 공개

10.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 vaccine  
11. Tetanus, Diphtheria and Pertussis vaccine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중장기적 전략 구축을 위한 민관학계 합동의 협의체 구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한 수요 조사 시 백신 기업(제조/수입사)역시 조사의 대상으로 확장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설문지 형식 이외에 업계가 함께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감안, 가장 실효성 높고, 백신 투여가치를 최적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고민하기 위한 민관학계의 협의체 구축을 건의 드립니다. (정기적 미팅 고려)

관련규정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공급 가격 결정 지침
관련부처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예방접종기획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

6. 예방접종 시행비 개선을 통한 다가 혼합백신 및 접종횟수를 줄인 백신에 대한 장려 방안 강구

**이슈요약**

다가 혼합백신은 접종횟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여줌으로써 접종률 향상 및 적시 접종에 크게 기여하여 피접종자, 보호자, 보건의료전문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가 혼합백신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또한 글로벌 표준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가 혼합백신의 사용을 더욱 장려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 혼합백신 시행비는 일반백신 예방접종 시행비의 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단가백신에 비해 높게 책정되기는 하지만, 접종자는 단가백신을 각기 별도로 접종하는 경우보다 다소 낮은 시행비를 상환 받으며 보호자에게 새로운 예방접종 옵션에 대한 안내와 안전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다가의 백신은 아니지만, 동일한 효능효과임에도 접종 횟수를 줄인 백신도 있으며 이는 다가 백신처럼 접종횟수도 줄이면서 오히려 접종을 빠르게 완료하여 해당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에 따라 다가 혼합백신에 대한 수요 및 개발은 앞으로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환경에 발 맞추어 접종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다가 혼합백신 접종을 장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행비의 추가적인 보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예방접종 시행비의 개선을 통해 다가 혼합백신 및 접종횟수를 줄인 백신의 접종 장려를 유도하여 환자중심적인 예방접종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 혼합백신과 접종횟수를 줄인 백신 등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콤포넌트를 인정하여 접종비를 상환해주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조한 방안을 건의합니다. 즉, 접종자로 하여금 다가 혼합백신과 접종횟수를 줄인 백신의 접종을 장려하여 피접종자와 보호자에게는 최선의 예방접종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통비용이나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에 대한 합리적인 접종비 산정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용 산정기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백신수급과, 예방접종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7. 전자적 정보제공 (e-label) 시범사업 일반의약품 확대

**이슈요약**

전자적 정보제공(e-label)의 취지는 한국의 선진화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해 환자에게 전자적 정보제공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의료전문인에 의해 투약되는 것이 아닌 환자가 직접 의약품의 표시사항을 읽고 약품을 복용하기 때문에 환자 눈높이, 환자 맞춤형 정보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약품의 제품설명서를 의료전문가용/일반소비자용 두 종류로 관리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의료전문가용/일반소비자용 구분없이 하나의 설명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허가사항은 쉬운 용어를 병기하고 있지만 환자가 스스로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제품설명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양이 많기 때문에 환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에 전자적 정보제공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본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며, 소아, 임부, 수유부 등 특정 환자군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의사항**

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e-label) 시범사업 2차 년도 제품 선정 시, 다양한 제품군 확대를 통해 e-label의 취지가 의약품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을 포함하여 대상품목을 선정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약사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8. 전문 의료인 교육을 위한 사용 전후 사진 활용

**이슈요약**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의료인 대상으로 사용 전후 사진을 활용하는 것도 효능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의료인의 교육 목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경험 향상을 위해 사용 전후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 사용에 도움이 되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목적과는 다른 적용이 필요합니다.

유럽, 미국은 학술 행사에서 전문 의료인 대상으로 제품의 사용 전후 사진 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의사항

전문 의료인 대상 교육을 위한 제품 사용 전후 사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9. 다종미생물 검사인 다종그룹 1 호흡기바이러스 신속검사에 대해 진검전문의 판독 조건 완화

이슈요약

검사료 중 검체검사의 감염검사 산정지침은 아래와 같이 진단검사전문 의사가 상주해야 판독이 가능합니다.

(주: 검사원리가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인 검사에 대하여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다만, 누-704 라, 누-704 마, 누-723 나 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코로나-19 등과 같이 전염력이 높은 호흡기바이러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진단에 의한 감염 확산 방지이고, 커뮤니티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누680 다종그룹 1에는 비인두 스왑(면봉)으로 얻은 검체로 5종 이하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30분 내외로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제품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산정지침으로 사실상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는 진단검사전문 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나, 가장 먼저 전파력이 조절되어야 하는 1차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보건소 등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감염검사 중 다종미생물\_다종그룹1 호흡기바이러스 신속검사에 대해 의원급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정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검사료 중 검체검사_감염검사 산정지침
관련부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등재실),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0. 코로나-19로 인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원가 상승 및 환율 변동 수가에 반영

이슈요약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생산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수입의 증가율은 높지 않습니다.<sup>12</sup> 이는, 수입업체 수 보다 생산업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sup>13</sup> 진단시약 및 장비의 원가를 포함한 제반비용이 상승한 이유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12. 21년 수출 증감율 30.29% vs 수입 증감율 9.02%,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실적 통계자료  
13. 20~22년 생산 업체 수 증가율 7.5% vs 수입업체 수 증가율 2.3%

물류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검사장비인데, 체외진단검사에서 가장 오래된 검사인 미생물검사의 경우 수입점유율이 100%입니다. 품목분류상 미생물배양기, 미생물분류동정장치로 구분되며, 국내에 도입된 지는 20년이 넘어 최초 도입 시 장비의 제반비용 보다 현재의 비용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해당 장비와 사용하는 시약의 판매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용건수가 늘었고 원가 및 제반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동일(또는 인하)한 수가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누581 상대가치점수: '12년 168.28점, '23년 167.95점)

치료재료의 경우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정기적인 환율변동 등 제조, 수입원가 변동폭을 상한금액에 반영하고 있으나 행위, 특히 별도산정 재료가 없는 검사의 경우는 비용 상승을 반영하는 기전이 전혀 없어 상승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업체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비용 상승이 반영된 적절한 수가 조정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보험

## 7

### 총 주요이슈

1. 금융분야 클라우드 관련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망

**이슈요약**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 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금융위에서도 개선안을 적용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비중요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23년 상반기)이라고 발표된 내용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건의합니다. (2022.11.23 보도자료 참고).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관련부처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금융규제샌드박스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개발/테스트 관련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망

**이슈요약**  
망분리 규제가 개인신용정보 보유 여부,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개발/테스트 서버까지 일률적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고 있어 개발/테스트의 효율성이 저해되며, IT근무환경 변화의 시대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규제 예외적용 개선안을 조속히 실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2.04.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한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서 동 사안이 언급되었으나, 2022.11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금융위 의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관련부처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금융규제샌드박스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계약자 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을 위한 손해보 참조순보험료율의 교차 선택 허용

**이슈요약**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제2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하거나 보험료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참고한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는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기준이 유연하지 않아, 판매건수 및 보험금지급건수가 많은 대형사는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 소형사는 판매건수 및 보험금지급건수가 적어 과거 경험통계로 경험위험률 산출이 어려워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형사의 경우 보험료율산출기관(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율을 사용하는데, 참조율을 산출하는 통계의 대부분도 대형사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되고 있어, 소형사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제7-73조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제5항에서 할증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기준이 유연하지 않아 여전히 소형사는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소형사도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사의 실정을 고려한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건의합니다.

즉, 보험료율산출기관(개발원)은 생보사와 손보사에 다른 참조순보험료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보장정의(보험금 지급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생보사와 손보사 구분으로 인해, 생보사는 생보참조순보험료율만을, 손보사는 손보참조순보험료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규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집단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생보/손보 참조순보험료율의 교차 선택이 가능하게 한다면,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보다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관련부처	금융위원회(보험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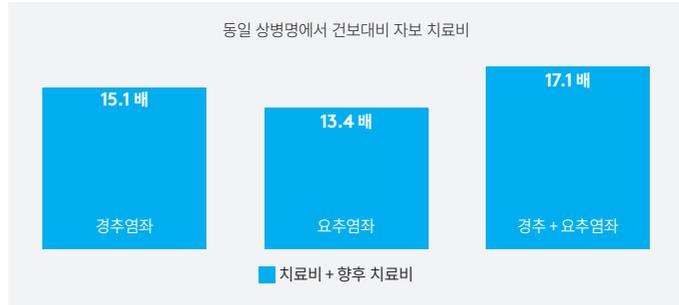
4. 경미 사고에 대한 진료기준 명확화

이슈요약

경미 사고의 경우 보상심리로 인한 과잉 및 불필요한 진료가 많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미 사고에 대한 공학적 분석을 통해 명확한 진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경상환자(부상급수12~14급) 진료비 비중은 82%로 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경요추염좌 진단의 경우 건강보험대비 자동차보험 치료비가 17.1배 높습니다.



출처: 보험개발원

경상환자 진료비는 연간 최대 7천억~1조3천억원 과다지급이 추정되며(19년기준), 이는 차량 한대당 자동차보험료 3.4~6.2만원 추가 부담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꼴입니다.

경미 사고로 인한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2년 10월 KBS 9시 뉴스보도)

건의사항

경미사고 피해자에 대해 의학적 소견 외 공학적 상해위험분석 적용을 위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상해분석의뢰를 활용한 일정 속도변화(ΔV) 이하의 경미사고는 진료를 제한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 속도변화(ΔV) 이하의 사고는 상해 없음으로 판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RCAR)는 속도변화(ΔV)에 따른 국제권고기준 제시

- 독일의 경우 속도변화(ΔV) 11km 미만 상해 없음 판단
- 스페인의 경우 속도변화(ΔV) 8km 미만 상해 없음 판단

관련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및 제11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과잉·확대수리 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이슈요약

특정 지역 정비업체들의 과잉·확대수리 행위가 만연해 있고 적정수리비를 지급하려는 보험사에 대한 폭력행사, 업무방해 등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제도개선과 함께 정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엄격한 계도·처벌이 필요합니다.

일부 정비업체에서 가벼운 범퍼 손상임에도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트렁크·휀다 등까지 확대 수리하여 과도하게 많은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과잉·확대 수리행위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2022년 2월 20일 SBS 언론보도)

이러한 정비업체가 많이 소재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별 평균 청구금액 대비 약 30% 이상(외산은 약 44%) 높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22.1 분기		'22.2 분기		'22.3 분기		'22.4 분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전국	832	1,719	837	1,704	836	1,743	100	100
인천지역	1,077	2,445	1,067	2,337	1,064	2,513	127	144
경기지역	868	1,815	874	1,791	874	1,830	105	105
서울지역	780	1,954	795	1,924	792	1,968	95	113
충남지역	923	1,475	910	1,523	899	1,466	108	84

보험사는 손해사정 기준 준수 및 적정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조직적인 정비업체 방해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 정비업체는 금감원에 민원을 지속 제기하거나 보상직원의 정비업체 출입제한 및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보상직원 피로도 누적을 통해 정당한 손해사정 무력화를 지속하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경미사고에 대한 과잉·확대수리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상(예: 제58조제4항, 별첨 참조)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의 의무에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준수에 대한 내용 및 위반시 벌칙조항 추가를 건의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확한 실태파악 및 관련 법령 위반시 엄격한 계도·처벌이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관할 지자체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입법촉구  
 이유요약  
 보험사기는 지속 고도화, 조직화되고 있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제정(2016년) 이후 한 차례의 개정 없이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어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발의법안 주요내용: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마련, 보험산업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 처벌, 보험사기 강력범죄 가중 처벌, 보험사기 업체 명단공표 등

건의사항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합니다. 또한 보험사기 대책을 위해 발의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관련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부처	국회 / 금융감독원(보험사기조사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IFRS17 자본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인한 배당 제한  
 이유요약  
 2022년 12월,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준비금의 목적은 보험회사의 배당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이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급여력비율을 평가하는 K-ICS\*에 의해 이미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은 IFRS17이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K-ICS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지급여력비율을 초과하는 자본에 대해서도 배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보험시장의 매력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 IFRS17: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7 in effect from 2023.1.1  
 \* 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건의사항

국제기준인 IFRS17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규정 삭제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 및 제6-18조의6
관련부처	금융감독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지식재산권

나은성  
 과장  
 지식재산권 위원회

## 7

### 총 주요이슈

1.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1.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0). Status Report on IPR Infringement.
2. OECD and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1). Global Trade in Fakes.
3. OECD and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1). Misuse of E-Commerce for Trade in Counterfeits.
4. OECD and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3). Risks of Illicit Trade in Counterfeits to SMEs.
5. 김시열. (2022). 위조상품 무역동향에 관한 OECD·EUIPO 공동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IP Focus(2022-04호)

이슈요약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보고서<sup>1</sup>, OECD와 공동으로 발간한 세계 위조품 무역에 관한 보고서<sup>2</sup>가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오용을 통한 위조품 거래에 관한 보고서<sup>3</sup>, 위조품의 불법거래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위험성에 관한 보고서<sup>4</sup>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조품 유통 수단 및 트렌드 등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연구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며 위조품 유통의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의 시각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을 비롯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조품에 대한 정밀하고 지속적인 조사·분석<sup>5</sup>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가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이슈요약

ECCK는 작년 12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국정과제 40개에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안건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한국의 낮은 형사처벌 수위는 여전히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방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은 '저작권법' 침해 시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5천만 원의 벌금,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 침해 시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불법 위조품 유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됩니다.

건의사항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국정과제를 통해 발표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적절히 검토되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비될 것을 권고합니다. 양형 기준의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양형 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이슈요약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관세청 및 일선 세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선진화된 유통환경에서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시장에 유입된 이후 단속을 하게 되면, 엄청난 행정력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에는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관련 연구 보고서<sup>8</sup>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관직원 순회교육이 1분기 4월부터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작년보다 많은 횟수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ECCK는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므로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건의사항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교역량의 추세에 맞추어,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검수율을 높이고 단속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8. 강준하, (2018).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제통상연구, 23(4), 97-125.

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이슈요약

관세청이 2015년부터 발간한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는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현황 및 주요 적발 사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ECCK는 지난 몇 년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압수량을 개수로 표기할 것을 관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보고서의 보다 신속한 발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CCK는 관세청이 2022년 보고서를 올해 4월 신속히 발간하고, 올해부터 압수량의 실제 수량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된 관세청 보고서를 토대로 위조품 수입 트렌드와 적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수량 표기는 괄목할 만한 개선 사항입니다.

건의사항

ECCK는 2022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보고서와 같이 앞으로의 보고서에도 모든 품목에 있어서 압수량의 실제 개수가 표기되고 신속하게 발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개정

5.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이슈요약

2018년 국제 우편물 통관 규정 제8 조의 2가 개정되어 위조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지 않고 압수·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관세청과 기업은 EMS(Express Mail Service)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신속한 소포 분류, 현장 감정, 소포 데이터베이스 등의 방법으로 위조품을 적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EMS 프로젝트가 확장되어 우체국 소포뿐만 아니라 항공 및 민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입된 소포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EMS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요하는 프로젝트로,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제 우편물의 방대한 양에 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어 국제 우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위조품의 검수율을 높이기 힘들며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압수된 우편물을 보관할 창고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위조품 적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매년 1-2회 정도 해외 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특송·우편물품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통관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적발되는 위조품의 양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98% 이상의 위조품이 수입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특송·우편물품을 통해 수입되어 들어옵니다.

### 건의사항

EMS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 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단속하기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EMS 프로젝트를 통해 압수된 소포의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 확장을 건의합니다.

또한 매년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특송·우편물품 집중단속을 연 1-2회 보다 더 높은 빈도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규정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관세청(전자상거래통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6.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 이슈요약

서울특별시 지자체 공무원들은 2013년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서울 유명 관광지에서의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를 상당 부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CCK는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ECCK가 서울시와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성과에 기여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ECCK는 현재 공공연하게 위조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국제시장과 대구광역시 서문 시장에서도 서울특별시 지자체와 같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계도하고 보다 자주 단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CCK가 2023년 5월 511명의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sup>7)</sup>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위조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7%가 노점상 및 전통시장에서 위조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노점상 및 전통시장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위조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로 하여금 위조품 감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의사항

부산중구청과 대구중청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38호, 제6조 제35호에 의거하여 위조 행위를 조사하고 불법 제품을 압수하기 위해 근무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제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
관련부처	부산중구청(일자리경제과) / 대구중구청(일자리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7.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방지 제도 마련

### 이슈요약

ECCK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상품판매 매개자의 간접책임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상표법 개정안(2020년 발의)과 더불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판매자의 정보제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2022년 발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마켓과 소셜미디어가 위조품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 트렌드 속에서 소비자들은 더욱 쉽게 불법 위조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불법 위조품의 판매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자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각 플랫폼마다 조치의 정도가 다른 상황입니다.

### 건의사항

ECCK는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국정과제 40개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방지 제도 마련' 안건이 포함된 것과 같이 특허청이 주도하여 상표법 개정을 이끌어 낼 것을 건의합니다.

더 나아가 상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상표권자, 마켓 플레이스 및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 간의 간담회와 같은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미 있는 의견 수렴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관련부처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주방 및 소형가전

## 6

총 주요이슈

###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 부적합 판정 이후 정밀 검사 개선

#### 이슈요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제4항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 동일사 동일 제품 정밀 5회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국·해외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 동일사 동일 재질 정밀 5회 + 해당 재질을 포함하는 제품 정밀 1회 (부적합 처분 후 최초 수입제품)

식품은 동일사 동일제품이 제조사 및 '제품명'으로 구분되지만, 기구 또는 용기의 경우 제조사와 '재질 및 바탕색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같은 제조사의 다른 종류의 제품을 다른 수입사에서 수입한다 하더라도(예: 믹서 - A사 수입, 핸드블렌더 - B사 수입) 타사에서 식품 접촉 재질 부적합 이력이 확인되면 해당 재질에 대해 수입회사와 상관없이 5회 정밀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재질에 대해 5회 정밀 검사는 기존 대로 진행하되 부적합 이후 해당 재질이 포함되어 첫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완제품 1회 정밀 검사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식약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방 기구·용기 제품의 경우 단순하게는 한 가지의 재질 및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복잡하게는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 커피 머신). 기구·용기 제품의 정밀 검사를 진행하려면 식품 접촉 부품을 검사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데, 각 부품의 공급처가 달라 해당 수량을 취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회사가 수입하는 해외제조사 제품의 재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해당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품을 포함한 최초 수입 제품인지, 즉 정밀 검사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없으며,
-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나와있는 부적합 판정 관련 정보에 색상은 표기되지 않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 부품의 검체 채취 조건은 같은 B/L(선하증권)에 있는 부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주문하여 별도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1. <https://impfood.mfds.go.kr/>

남은 방법은 완제품을 모두 분해하여 검사를 위한 부품 수량을 맞춰 준비하는 것인데, 크기가 작은 부품의 경우 검사용 시료 수량을 맞춰 제출하기 위해 몇 십 개의 완제품을 분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에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당한 검사 기간이 소요되어 통관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완제품은 분해 후 재조립이 불가능하여 검사 후 폐기를 처리가 되는 등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건의사항

기구 및 용기의 경우 제품이 아닌 재질 및 색상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과 같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재질에 대해서만 5회 정밀 검사를 유지하고 부적합 재질이 포함된 제품 최초 수입 시 제품에 대한 정밀 검사는 추가하지 않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0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2.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5년 주기 정밀 검사 제도 개선

#### 이슈요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2.가.7)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것 중, 별표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은 별표10 제4 호 다목에 따라 '제조국·해외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5년(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구 용기의 경우 식품과 달리 정밀 검역을 받게 되면 식품 접촉 부위에 해당하는 부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품이 많은 제품(예: 믹서, 커피 머신, 토스터기 등)은 특히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재질, 색상 분류 등 검사 대상 관련 부품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 기간 필요
- 검사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데, 각 부품의 공급처가 달라 해당 수량을 취합하는데 시간 소요
- 5년 도래 후 첫 수입신고 일정에 맞춰 해당 완제품과 함께 하나의 B/L(선하증권)로 모든 부품을 선적하여 들어오는 일정 조정
- 일부 부품 수급이 기간 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 수입 불가
- 다품종 소량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5년 주기가 한 번에 도래하는 제품이 많으면 다양한 제품의 모든 부품을 특정 기간 내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위와 같은 이유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유효기간 5년이 도래하기 전 선제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5년 이내에는 서류 검사 만이 가능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정밀 검사 진행을 요청할 수 없다는 식약처의 민원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의사항**

기구 용기의 경우, 최초 수입 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5년이 도래하기 1년 전부터 업체가 요청하는 시기에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한 번에 여러 제품의 정밀 검사가 물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업체는 체계적으로 일정을 조정하여 검체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이 도래하기 전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0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제품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입하는 주방용 기기부속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표시사항 면제

**이슈요약**

주방용 기기(커피 머신 및 음료 제조기 등)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기기의 수리를 위해 부품을 수시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닌, 기기의 수리 및 교체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서비스센터의 숙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수행하고 있으며, 재수입되는 부품은 해당 주방용 기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품이 제품의 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표시사항에 대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품을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를 하고 표시사항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수입하는 부품의 특성상 소량 다품목에 낮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 부착에 따른 제반 비용(인건비, 인쇄비 등)이 발생하여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제품 수리 목적으로 재수입되는 주방용 기기의 부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입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전문 수리 목적으로 부품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면,

i) 해당 부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ii)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기기 수리 및 교체에 사용되며, iii)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자사 제조 가공 목적 수입 식품 등'의 경우 표시 의무가 일부 면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품의 경우 제품명과 제조업소의 명칭만 표시할 수 있도록 별표 1 표시의무 면제 항목에 '부품 수리 및 교환'을 포함해주시길 것을 건의 드립니다.

나아가 수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품의 경우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항의 나에 따라, 일부 표시가 영어 또는 수출국 언어로 되어있는 경우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수입검사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분리배출 표시 재검토 및 플라스틱류 표기 국제화

**이슈요약**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한국의 분리배출 표시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으며 표시사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sup>2</sup>. 이러한 변화는 사업자에게 세분화된 표시사항을 제품에 적용하여 라벨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표시사항을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재활용 의무를 보다 수월하게 이행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질별 분리배출 표시 기본도안: <https://www.keco.or.kr/web/lay1/SIT183CI049/contents.do>

한국의 분리배출 표시 중 플라스틱류는 Resin Identification Code (RIC) 분류 표기와 같이 분류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고와 표기 방법이 동일하지 않고 분리배출 표시에 한글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제품 수입 시 같은 내용의 정보를 한국형 로고로 다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포장재에 한국형 로고를 추가하거나 스티커를 덧붙이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RIC 분류 표기]



[한국 분리배출 표시 - 플라스틱]



국가별로 재활용 가능 표기를 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플라스틱에 대한 표기는 대부분 RIC 코드의 형태와 같거나 유사합니다.

건의사항

제품 라벨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자원이 필요한 일이며 동시에 많은 자원이 폐기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분리배출 표시에서 추가적인 변화는 지양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분리배출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추가 표기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시기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 한국형 표기를 국제기준 표기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검토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관련부처	환경부(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 위치 개선

이슈요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중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2.다.에 따르면, 제품의 적합성평가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로 수출하는 글로벌 제품의 특성상 공통 각인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공통 재고로 운용 가능하여 유연하게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제품에 적합성평가정보인 상호,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자,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 전용 각인 문구를 적용한 제품만 수입 가능하여 물류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재고 운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타국가 및 국내 유사 법령 내용

[EU -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sup>3)</sup>

제품에 수입업체명, 제품명 또는 로고 및 연락 가능한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 또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표시해야 한다. 연락처 정보는 최종 사용자와 시장 감시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9조 표시방법]  
안전인증등의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Directive 2014/30/ 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건의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서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 위치를 해당 제품 및 포장에 아닌,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변경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가정용 저울의 검사 기준 완화

이슈요약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형식승인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법령에서 최대용량 및 정밀도로 형식승인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sup>4)</sup> 상거래용이 아닌 가정용 저울이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 7: 1. 다 전기식지시 저울 (최소눈금 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형식승인을 받기위한 까다로운 인증 조건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가정용 저울은 상품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목적에 비해(가정용) 과도하게 정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제품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지나친 규제라고 사료됩니다.

건의사항

전기식 지시저울의 형식승인 대상에 대해 최대용량 및 정밀도로 규정하는 법률 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기존 법 취지에 맞게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형식승인을 진행하고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최대용량과 상관없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22년 12월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주요과제에서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증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과제의 신속한 진행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관련규정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물류 및 운송

## 3

### 총 주요이슈

#### 1.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 이슈요약

황해 정기선 협의회의 한국-중국 교역로의 선박 배치 및 관리에 관한 내부 규칙과 같은 일부 규정은 협정 및 규정을 만든 국가의 국적 선사에게만 항로가 개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예: 황해의 경우에는 한국 및 중국 국적선에게만 노선을 개방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예: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한국행 노선에 대해서 다른 국적선이 항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ECCK에서 백서를 통해 문의한 바에 따르면 정기해운회사가 운항계획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해운회사나 선박의 국적이 따라 한국과 외국간 선박운항에 제한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비정기선은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중 노선의 경우 한·중 정부가 양자 협정을 통해 노선 개설 및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예를 들어 타 국적선이 해당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허가나 설명 없이 외국 국적선들이 해당 노선 운영에 대해 각기 다른 정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한국과의 무역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의사항

ECCK는 그러한 내용이 양자 협정 내 또는 외국 선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면 지침의 형태로 존재하는지(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건의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업계 관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 선사는 위에서 언급한 항로에서의 운영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한국과 다른 지역 정부(예: 중국 및 일본)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있을 경우, 다른 국적의 비회원사 및 선사는 한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한국과의 무역을 강화하고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비회원사 및 선사에 대한 노선이 공식적으로 개방된 경우 한국 무역 회사가 지역 내에서 수출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황해정기선사협의회 규약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2. 점진적인 연안운송 기회 확대

##### 이슈요약

몇몇 국가는 최근 몇 년간 연안운송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물류 및 운송 산업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수용능력을(capacity)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해운법은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제한된 항구에 기항하거나 국내 항구 간에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선사는 예를 들어 인천-부산간 노선과 같은 국내 노선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인천과 같은 주요 항만은 현재 수용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사가 인천에서 직접 운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노선 운행 불가 규정에 따라 외국 선박은 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환적화물의 경우, 외국 선사와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증가로 이어져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주요항만과 연계한 항만간 서비스확대는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연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입과 수출 모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산업이 현재 기후 변화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항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확장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물류 및 운송 산업의 빠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연안운송 규제는 국내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 개발도 제한합니다. 외국 선사의 국내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귀중한 노하우, 최신 모범 사례 및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연안운송 규제 조항 및 서비스 확장을 통해 외국 선사는 국가 비상 사태 발생 시 전국적으로 귀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국가 안보 조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백서 상 본 건의사항을 제출하였고, 그 후 전달받은 답변에 따르면 보안 및 경제적 문제로 본 건언이 수락되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럽 회원사들은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고 또한 국내 해운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연안운송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 산업 동향 및 발전을(인천 신항만 개발 등) 감안할 때, 외국 선사들은 물류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입 성장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항과 같은 주요 항만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더 큰 외국 선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연안운송 규정의 검토를 통해 한국은 국가 안보상의 문제없이 서비스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해운법 6조의 2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 선사가 현지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이나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상사고나 압류를 피하는 경우,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상기 명시된 내용 및 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외국 선사와 협의하여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안운송법 개정은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고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성장을 허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연구와 연계하여 연안운송 규정을 시행할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역량 확대, 지식 전수, 지역 및 국제 수준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입(특히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기반을 둔 현지 수출입 기업의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인천항 성장에 대한 지원(특히 신규 시설 개발에 비추어 볼 때)은 국가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항구 개발을 위한 더 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국가 비상 사태의 경우 국내 다른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향상된 연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화물 운송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력, 절충 및 협업을 통해 물류 및 운송 산업과 무역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이끌고, 한국 산업과 외국 운송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선박법  
 해양수산부  
 개정

3.

항만 운영을 위한  
친환경 정책 체계 도입

이슈요약

물류·운송산업의 항만과 기업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장비 투자와 친환경 정책의 적기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장비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재로 국내 친환경 항만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의 현 수준을 감안할 때, 정부의 국가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친환경 설비 전환 사업을 지원·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ECCK는 해양수산부가 환경부의 유해배출물의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하역(화물 하역)장비 조달 및 시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수립하여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항만과 물류·운송시설로의 보다 큰 규모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녹색전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탄소제로(Net-zero) 목표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해양수산부, 환경부  
 신규

# 조선 및 해양

## 1

### 총 주요이슈

1.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Vessel)과 관련된  
외국 선급협회에 대한  
불공정한 비즈니스  
기획

#### 이슈요약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외국 국적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국내외 모든 선급협회가  
선박에 대한 안전 인증 기관(RO)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선박안전법을 시행하여 한국 선사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  
로 선박을 신조하거나 중고선 도입 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재무 시스템을 도입하  
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용선 기간이 종료될 때 한국 국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한국  
의 선박 운송 회사가 선박의 소유권을 획득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제도에 따라 운항하는 선박은 국내  
선급협회 기관인 한국 선급 또는 2015년에 한국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프랑스  
선급에 의해 매년 의무 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선박이 이미 다른 국제  
선급협회에 의해 검사 및 인증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박 회사들은  
이중으로 선급 유지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피하고자 한국 선급 또는 프랑스 선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자금 조달 및 환불 보증

한국 선급(Korean register: KR)은 신조선 선박에 대한 국가 자금 조달 및  
환불 보증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금융공사 및 한국 선급 간에 협정이 체결되어, 자금 조달과 보증은 한국  
선급으로 지정된 신조선 선박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한국 조선소는 보통 지역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과 환불 보증을 받으며, 이러한 협정으로 인해 한국  
시장은 사실상 국외 선급협회에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국외 주요 선급협회들은  
한국 내 자회사, 지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국제 선급 협회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박회사의 선택을  
제한하여 한국 해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합니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및 WTO-GATS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건의사항

공정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자금 지원 및 환급 보증을 한국 선급에만 허용하는 것을 중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신규

# 지속가능성

사회적인 요건 뿐 아니라 녹색 금융과 관련한 부분도 동시에 검토하여 더욱 일관되고 통일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같이 일관된 기준이 마련된다면 모든 산업과 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 계획을 개발하는 데에 보다 강력한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은 민간부문의 지원을 받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1

### 주요이슈

1. 녹색 금융과 관련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후전환 계획의 개발

#### 이슈요약

한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후전환과 관련된 핵심 법안 중 하나는 '탄소중립 기본법'이며, 해당 법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는 5년마다 관련 조건, 전망,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을 재검토 및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업무를 추진하며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중추 역할을 도모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필수적인 탄소중립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금 조달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에 따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를 포괄함과 동시에 간결하고 일관된 기후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한국 및 외국 기업들이 그에 따른 기후전환에 필수적인 분야에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 건의사항

싱가포르의 경우 전담 부서인 '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가 존재하며,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기후전환과 지속가능금융을 모두 관장하며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지속가능 전담 부서는 없지만 대통령실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전환 계획 및 연계된 녹색 금융을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CCK는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할 때 기술적/

#### 관련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관련부처

환경부, 기획재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88730&menuId=10525>)

# 조세

## 3

### 총 주요이슈

#### 1. UTPR(소득납입보완 규칙)의 도입

##### 이슈요약

한국은 2022년 12월 OECD의 권고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동 규정에는 OECD 모델 규정의 'Under-taxed Profit Rule (UTPR)'에 해당하는 '소득납입보완규칙'이 포함되어 있고,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납입보완규칙'의 목적은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소재한 모든 국가에서 최소한 15%의 실효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규칙은 (i) 그룹 내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이어서 부담할 추가세액이 있고, (ii) 최종모기업(또는 차상위에 있는 모기업)의 소재지에서 소득납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아 소득납입규칙 하에서 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으며 2024년부터 기본 규칙을 도입하고 빨라야 1년 후인 2025년부터 UTPR을 도입하는 단계적 실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UTPR을 시행할 계획이며, 영국은 UTPR발효일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주요 국가들이 기본 규칙을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나, 예정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최종 모기업이 EU에 소재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 다국적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이 2024년부터 UTPR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2024년부터 UTPR을 시행할 경우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한국과 관계없는 사업과 관련해 한국에 상당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건의사항

한국의 UTPR 시행일을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연기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다른 국가가 아직 기본 규칙을 시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한국이 2024년에 UTPR을 시행함으로써 국내에 투자한 다국적기업들에게 초래될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관련부처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2. 단일세율 적용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 제외

##### 이슈요약

사택 제공 관련 이익이 기존에는 근로소득 제외 대상이었으나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 받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택 제공 관련 이익이 오히려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칙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해당 개정 사항을 적용함을 별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급격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의 개정 취지는 과세대상 확대 목적이 아니라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급여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과도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사택제공이익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과세하게 되며, 단일세율의 취지가 고급인력 유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특례 실효성 상실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건의사항

2024년 1월 1일 이후에도 단일세율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택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세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3.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 이슈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6 제5항에 따라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명당 300만원(고등학생 이하) 및 900만원(대학생)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만 공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세법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관련부처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카산드라 탈봇  
과장  
관광산업 위원회

# 관광산업

## 6

총 주요이슈

### 1.

서비스 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제도 활성화 방안

### 이슈요약

현행 자원 재활용법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에서 일회용 편의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물병과 같은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호텔 및 외식업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호텔들이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유리 용기의 사용은 많은 업계에서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유일한 선택은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대체제를 구매하는 비용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는 호텔이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채택하고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약속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예: 09. 산업 혁신과 기반시설,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 12. 책임 소비, 13. 기후 대응 등)를 달성하는 데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건의사항

ECCK는 플라스틱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 공급업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용기의 생산과 판매는 더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고, 호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물병 및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NSDG 2018) 관광진흥법(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	---

관련부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이슈요약**  
호텔 및 외식업계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산물 옵션의 공급 확대  
호텔 및 외식업계 산업은 친환경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과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달성을 위해 협조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DG의 11번째 목표인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12번째 목표인 '책임 있는 소비', 그리고 14번째 목표인 '수중 생태계 보전'에 부합하여, 호텔들은 식음료 서비스를 위해 인증된 지속 가능한 해산물 공급업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농업지원협의회(ASC)와 해양자원관리협의회(MSC)는 인증 받은 지속 가능한 해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해산물로 인증 받기 위한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어업 및 어장이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해산물의 조달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건의사항**  
유럽에서는 어업 자원에 대한 정부 할당량 및 인증된(제3자)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조달 관행의 이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CCK는 지방 정부가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표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 어업에 대해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호텔 및 관광업계가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어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번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법)</li> <li>관광진흥법(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li> </ul>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이슈요약**  
관광 및 숙박업의 인력난 해소방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일부 산업들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를 겪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기업들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최근 E-9 비자 시스템이 변화했고 노동력이 부족한 다음의 5개 산업은 조건에 따라 E-9 비자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E-9-1): 일반 제조업의 중소기업체
- 시공(E-9-2): 건설공사 현장
- 농업/축산업(E-9-3): 작물재배업,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
- 낚시(E-9-4): 연안과 근해 어업, 양식, 소금 채취
- 서비스(E-9-5):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 냉동 창고업, 재활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출판업(책, 음악)

반면, 관광 및 숙박업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슷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타 규정 및 필수 요구 사항(예: 한국어 수준)으로 인해 해당 산업의 필요 인력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건의사항**  
정부가 2023년 6월 5일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관광숙박업의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전담팀이 실시하여 인력난의 정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ECCK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또한 E-9 비자 제도가 관광숙박업을 포함하도록 재검토 및 개정되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광 및 숙박산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한국 관광 분야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외국인 학생들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업계에서 연수생으로 일하는 동안 한국어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외국 출신 졸업생들이 장기 학생 비자로 현지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호텔에서 전임 유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뛰어난 일본어 능력을 처음부터 갖추지 않고도 일본의 호텔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해결책들을 고려한다면, 관광 숙박 산업에 필요한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다문화와 다언어 직원들이 지역 관광 분야에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을 핵심 관광지로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어 학습을 촉진하며, 부산세계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글로벌 행사 및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정책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37일/36일)</li> <li>관광진흥법 (제7절 관광종사원)</li> </ul>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이슈요약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에 관한 현지 규정 도입 및 개발

관광 부문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전 세계 관광 탄소 배출량의 거의 50%는 대부분 항공과 관련된 운송의 결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 및 관광 활동이 재개되었으므로 항공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사용 확대와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업계가 2025년 최소 2% 혼합 SAF 사용에서 2030년까지 100% SAF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EU 항공에 공급되는 연료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혼합 명령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국가/지역에서 SAF 생산, 규제 및 사용을 위한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이를 위한 규제나, 동등한 탄소 배출권 제도 또는 전환을 장려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정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및 대중의 인식 부재로 인해 항공사는 더욱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전환할 동기가 부족하고 SAF를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더라도 세금 신고 목적으로 SAF를 분류하는 명확한 현지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은 항공사와 한국 정부 모두에게 효과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추구하는 데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장벽이 됩니다.

### 건의사항

바이오 제트 연료 공급의 확대는 항공 부문뿐만 아니라 관광 부문 전반적인 탈탄소화 과정의 핵심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ECCK는 한국 정부가 SAF에 관한 국내 규정을 국제 규정 및 표준과 조화시키고 동시에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SAF는 현재 화석 기반 제트 연료보다 비싸지만 미래의 생산 규모 확대에 인하여 장기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통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내 및 외국 항공사 모두 한국이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이슈요약  
관광 부문의 연결성 및 환승 옵션 개선

정부는 2023~2024년을 한국여행의 해로 정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바운드 국제 여행 및 관광(국내로의 외국인 입국 여행)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연결 및 환승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과 김포공항 간의 환승 옵션 분리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며 외국인 여행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국내 환승 옵션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자주 없으며 제한적입니다. 반면 김포는 상당한 국내 환승 옵션이 있지만 인바운드 국제 여행지역들은 인근 지역(대만, 일본 등)으로 제한됩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체 여행 예약에서 '개별 맞춤 여행' 및 '워케이션(일+휴가 결합)' 유형의 여행으로 점진적인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크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교통 시스템 및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여행자는 관광 홍보 지역(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하는 지역) 또는 주요 국제 행사 지역(예: 부산 월드 엑스포)과 같이 전국적인 국내 여행지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건의사항

ECCK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해외 방문자들을 위해 더 나은 환승 및 국내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이동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제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의 외국인 여행 및 관광 전문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바운드 국제 관광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및 외국 관광 비즈니스 산업 모두가 전국적으로 더 잘 회복하고 확장하며 번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6. 호텔 옥외광고물 제한

#### 이슈요약

기존 사무실 건물 등과 비교했을 때 잠재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호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규제에 따르면 호텔 옥외광고물은 건물 너비의 반폭 이상 넘지 않는 광고물 2개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광고의 글씨가 작아져 가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의사항

특히 폭이 좁은 건물의 경우, 옥외광고 제한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더 유연성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줄임말

줄임말	국문
ABV	알코올 도수
ARECs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ASC	수산업협동조합법
BBCHP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B/L	선하증권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DREC	약제급여평가위원회
EBL	발전사업허가
E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EZ	배타적 경제수역
EIA	환경영향평가
EMS	국제우편물
EV	전기차
FAS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
FMCG	일용소비재
GENCO	발전사
GHG	온실가스
HCP	의료전문가
ICER	점증적 비용효과비
KBA	독일 자동차청
KENCIS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
K-NSDG 2018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LOI	투자의향서
LSD	리소좀축적병
MPS	뮤코다당증
MSC	해양자원관리협회의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줄임말

줄임말	국문
NOx	질소산화물
OPPW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OSHA	산업안전보건법
OTC	일반의약품
PE	약물 경제성 평가
PM	미세먼지
PVA	사용량 약가연동제
RIC	수지 식별 코드
RO	안전 인증 기관
RSA	위험분담계약제
SoC	위해우려물질
SPC	특수목적법인
STTCL	조세특례제한법
TSN	대체자료 기재 승인 명칭
VAT	부가세
VIN	차대번호

# 줄임말

줄임말	국문
ACRC	국민권익위원회
DAPA	방위사업청
FSC	금융위원회
FSS	금융감독원
FTC	공정거래위원회
GIAK	손해보험협회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ATS	국가기술표준원
KCS	관세청
KDCA	질병관리청
KEA	한국에너지공단
KECO	한국환경공단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PCO	한국전력공사
KFTC	공정거래위원회
KHIDI	보건산업진흥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PO	특허청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KOSIS	국가통계포털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MAFRA	농림축산식품부
ME	환경부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MOEF	기획재정부
MOEL	고용노동부
MOF	해양수산부
MOGEF	여성가족부
MOHW	보건복지부
MOIS	행정안전부
MOLEG	법제처
MOLIT	국토교통부

줄임말	국문
MOTIE	산업통상자원부
MS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S	중소벤처기업부
NHIS	국민건강보험공단
NIER	국립환경과학원고시
NSSC	원자력안전위원회
NTS	국세청
OSHRI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CIP	국가지식재산위원회
QIA	농림축산검역본부
TPRC	교통환경연구소

# 기관별 안전 리스트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물질별 신청	5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화학물질의 대체명칭 작성 방법 변경	57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조사 면제사항의 중복규제 해소	58
	관광 및 숙박업의 인력난 해소방안	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 위치 개선	108
	제품의 수선 및 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통신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75
관세청	물류 허브 이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 및 원산지 규정 재검토	51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100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101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101
	브랜드 전시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 집기에 대한 관세 감면	76
국세청	주류소매면허자에 주류 전자 상거래 기회 제공	47
국토교통부	한-EU FTA 및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에서의 기술규정 인정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	31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수정	32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국회	구동축전지 안전성 인증 제도	33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34
	구동축전지 안전 기준에 대한 UN Regulation 형식 승인서의 인정	35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제도 개선	36
	신기술에 대한 특례 인정 절차의 마련	37
	자동차 관련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45
	자동차 규제 부처의 일원화	45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에 관한 현지 규정 도입 및 개발	124
	관광 부문의 연결성 및 환승 옵션 개선	125
	경미 사고에 대한 진료기준 명확화	96
금융감독원	과잉·확대수리 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97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입법촉구	98
금융위원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입법촉구	98
	IFRS17 자본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인한 배당 제한	98
기획재정부	금융분야 클라우드 관련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망	94
	개발/테스트 관련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망	94
국세청	계약자 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을 위한 손생보 참조 순보험요율의 교차 선택 허용	95
	주류소매면허자에 주류 전자 상거래 기회 제공	47
국세청	발효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48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혁신 가치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81
	UTPR(소득신입보완규칙)의 도입	118
	단일세율 적용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 제외	119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119
	녹색 금융과 관련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후전환 계획의 개발	116
부산광역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102
대법원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99
문화체육관광부	서비스 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제도 활성화 방안	121
	호텔 및 외식업계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산물 옵션의 공급 확대	122
	관광 및 숙박업의 인력난 해소방안	123
	관광 부문의 연결성 및 환승 옵션 개선	125
	호텔 옥외광고물 제한	126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제도 개선	29
보건복지부	주류 방송 광고 시 알코올 도수 제한 재검토	52
	혁신 가치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81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대상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	84
	희귀 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 확대	86
	현재 운영중인 약가제도의 절차 개선	87
	다종미생물 검사인 다종그룹1 호흡기바이러스 신속검사에 대해 진검 전문의 판독 조건 완화	92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코로나-19로 인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원가 상승 및 환율 변동 수가에 반영	93
대구광역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102
산업통상자원부	물류 허브 이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 및 원산지 규정 재검토	51
	육·해상풍력을 위한 월별(혹은 분기별), 전압별 전력 계통 및 연계 관련 정보 공개 방안 필요	65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완화	65
	육상풍력 전기사업허가의 주민수용성 심사기준 필요	67
	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개선	69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확대 적용	70
	한-EU FTA 및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에서의 기술규정 인정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	31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수정	3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시설에 대한 변경 보고 절차의 명확화	4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등재 절차 개선	43
	자동차 관련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45
	자동차 규제 부처의 일원화	45
	유아용 섬유 제품의 안전확인 시험결과 상호 인정에 대한 시험기관 간 계약	72
	QR코드 사용을 통한 상품 정보 표시	73
	제품의 수선 및 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	74
	가정용 섬유제품 취급상 주의사항 생략	75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가정용 저울의 검사 기준 완화	109
소방청	자동차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무역 장벽 요소 제거	44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양표시 기준 도입	50
	축산물 가공품의 '수입위생평가' 검토 소요 기간	78
	제품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입하는 주방용 기기부속품에 대한 수입 신고 및 표시사항 면제	106
	재생 원료 사용 식품용기 허용 기준 마련	79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재질 부적합 판정 이후 정밀 검사 개선	104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대한 5년 주기 정밀 검사 제도 개선	105
	규정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재검토	60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제 도입	60
	화장품 표시 광고의 표현 범위 확대	61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기준의 오차 허용치 적용	62
	수입화장품 해외제조소 사후 관리 점검 기준 완화	62
	전자적 정보제공(e-label) 시범사업 일반의약품 확대	91
	전문 의료인 교육을 위한 사용 전후 사진 활용	91
질병관리청	혁신적 백신의 가치 인정 및 신규 도입 절차 개선	88
	예방접종 시행비 개선을 통한 다가 혼합백신 및 접종횟수를 줄인 백신에 대한 장려 방안 강구	9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 금융과 관련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후전환 계획의 개발	116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99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방지 제도 마련	103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규정 개선	68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110
	점진적인 연안운송 기회 확대	111
	항만 운영을 위한 친환경 정책 체계 도입	113
	호텔 및 외식업계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산물 옵션의 공급 확대	122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Vessel)과 관련된 외국 선급협회에 대한 불공정한 비즈니스 기회	114
환경부	재생 원료 사용 식품용기 허용 기준 마련	79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	80
	분리배출 표시 재검토 및 플라스틱류 표기 국제화	107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유예기간 추가	63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에서 '재활용 포장재'는 적용 제외	63
	국외등록을 위한 정부 보유 국내 유해성 자료의 구매	53
	등록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의 글로벌 조화 및 판정근거의 정당성 제안	54
	연구개발 면제 물질의 사후처리결과보고서 합리화	55
	살생물제품 승인 시 향료에 대한 유·위해성 자료 제출 및 면제 조건에서 성분의 함량 기준 설정 요청의 건	56
	배출가스 변경보고 절차에서의 전산화 적용	37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FAS)에서의 유연성 부여	38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중·대형 상용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의 마련	39
	전기자동차의 저온 전기동력 주행거리 시험 조건	39
	전기자동차의 인증 시 제출하는 자료 항목의 개선	40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41
	인증 시험/광고 목적 자동차에 대한 관리 기준의 개선	41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KENCIS) 개선을 통한 인증 절차 효율화	42
	자동차 관련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45
	자동차 규제 부처의 일원화	45
	항만 운영을 위한 친환경 정책 체계 도입	113
	서비스 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제도 활성화 방안	121
	금속장신구 납 함량 기준	72
	녹색 금융과 관련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후전환 계획의 개발	116

#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3